

經營學碩士 學位請求論文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ax Support System
o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in Korea



2011年 1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海運經營學科
林 采 煥

本 論 文 을 林 採 煥 의 經 營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認 准 함.

委 員 長 李 基 煥 ①

委 員 安 奇 明 ①

委 員 劉 成 眞 ①



2011年 12月

韓 國 海 洋 大 學 校 大 學 院
海 運 經 營 學 科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3
제2장 중소기업 및 조세지원제도의 국내외 현황.....	4
제1절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4
1. 중소기업의 정의.....	4
2. 중소기업의 범위.....	5
3.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	7
4. 선진국 중소기업의 범위.....	10
제2절 국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비교.....	15
1. 국내 중소기업의 현황.....	15
2. 국내외 중소기업의 현황비교.....	18
제3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현황.....	20
1.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	20
2. 법인세법상 지원제도.....	21
3. 지원내용별 분류.....	22

제4절 선진국의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현황	23
1. 미국의 조세지원제도.....	23
2. 영국의 조세지원제도.....	27
3. 일본의 조세지원제도.....	30
4. 대만의 조세지원제도.....	36
제5절 국내외정책현황의 유형별 비교	39
1. 창업 및 벤처활성화 지원제도.....	39
2. 연구개발 지원제도.....	41
3. 설비투자 지원제도.....	42
4. 중소기업 투자자 지원제도.....	44
5. 기타 지원제도.....	46
6. 국내외정책비교를 통한 전망.....	48
제3장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50
제1절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내용과 지원방법	50
1.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내용.....	50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방법.....	61
제2절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63
1. 기업규모와 조세부담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63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64
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투자촉진효과에 관한 연구.....	66
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67
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기업 가치평가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8
제3절 선행운용실태연구의 기간별 흐름에 관한 분석	70
1. 선행연구표본의 구성.....	70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현황.....	70

제4장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84
제1절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운용실태.....	84
1. 설문표본의 구성.....	84
2. 중소기업의 기장실태 및 세무신고 현황.....	88
3. 중소기업의 세무행정 추진과제 및 방법과 세무조사 등 현황.....	89
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92
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 및 평가.....	93
6.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세제지원방안 및 개선사항.....	95
제2절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97
1. 조세지원제도의 정비.....	97
2.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00
3. 중소기업 법인세율 체계의 검토.....	105
4.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교육 및 홍보강화.....	108
제5장 결론.....	110
1. 연구의 시사점.....	110
2. 연구의 요약.....	111
3.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의 방향.....	112

< 표 차 례 >

<표 2-1>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	17
<표 2-2> 중소기업 상한기준.....	18
<표 2-3> 중소기업 하향조정.....	18
<표 2-4> 선진국 중소기업의 범위.....	23
<표 2-5> 법인의 자산규모별 및 사업기간별 통계.....	27
<표 2-6> 우리나라 제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비중추이.....	28
<표 2-7> 주요국별 중소제조업의 비율.....	30
<표 2-8>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	32
<표 2-9> 법인세법상 지원제도.....	33
<표 2-10>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34
<표 2-11>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34
<표 2-12> S 법인제도.....	35
<표 2-13> 사업용 상각자산의 비용처리.....	35
<표 2-14> 최저한세 적용배제.....	36
<표 2-15> 창업비 상각.....	36
<표 2-16> 소기업 주식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의 부분적 과세면제.....	36
<표 2-17> 파트너쉽에 대한 조세지원.....	37
<표 2-18>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적용.....	37
<표 2-19> 퇴직연금설계비용 세액공제.....	38
<표 2-20> 자산에 대한 비용공제.....	39
<표 2-21>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용공제.....	39
<표 2-22> 기업투자계획.....	40
<표 2-23> 경감법인세율 적용.....	40
<표 2-24> 부가가치세 산출시 저율 적용.....	41
<표 2-25> 엔젤세제.....	42
<표 2-26> 산업경쟁력을 위한 정보기반강화세제.....	42
<표 2-27> 연구개발촉진세제.....	43
<표 2-28> 인재투자촉진세제.....	44
<표 2-29> 사업승계원활화를 위한 세제조치.....	44
<표 2-30>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45
<표 2-31>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	45

<표 2-32> 중소기업기반강화세제.....	46
<표 2-33> 중소기업의 소액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의 손금산입 특례제도.....	47
<표 2-34>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정지.....	47
<표 2-35> 토지증치세의 균등납부.....	48
<표 2-36> 정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토지증치세 최저과세구간의 세율적용.....	48
<표 2-37> 연구개발·실험비용의 과세소득에서의 공제, 기기설비의 단축상각 등.....	49
<표 2-38> 유보잉여에 대한 과세.....	49
<표 2-39> 투자손실준비금의 처리.....	50
<표 2-40> 중소기업 정책비교(창업 및 벤처활성화지원).....	51
<표 2-41> 중소기업 정책비교(연구개발지원).....	52
<표 2-42> 중소기업 정책비교(설비투자지원).....	54
<표 2-43> 중소기업 정책비교(중소기업 투자자지원).....	55
<표 2-44> 중소기업 정책비교(기타).....	58
<표 2-45> 한국·미국·일본·대만 중소기업 정책 비교.....	60
<표 3-1>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방법에 따른 비교.....	73
<표 3-2> 표본의 구성.....	82
<표 3-3> 중소기업 기장실태.....	82
<표 3-4>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의 애로사항.....	83
<표 3-5> 조세관련 정보취득방법.....	84
<표 3-6> 세정혁신 우선 추진과제.....	85
<표 3-7> 성공적 세정혁신을 위한 추진방법.....	86
<표 3-8> 세무행정상 개선사항.....	87
<표 3-9> 세무조사의 바람직한 방향.....	88
<표 3-10> 경영안정·기술인력개발·창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89
<표 3-11>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90
<표 3-1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	91
<표 3-13>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정도.....	92
<표 3-1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 이유.....	93
<표 3-15>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94
<표 3-16>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95
<표 4-1> 응답자 연령분포.....	84
<표 4-2> 응답자 학력분포.....	85
<표 4-3> 응답자 직위분포.....	85

<표 4-4> 응답자 담당업무분포.....	86
<표 4-5> 응답자 근무경력분포.....	87
<표 4-6> 응답자 업체 종사자 수 분포.....	87
<표 4-7> 중소기업 기장실태.....	88
<표 4-8>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의 애로사항.....	88
<표 4-9> 조세관련 정보취득방법.....	89
<표 4-10> 세정혁신 우선 추진과제.....	89
<표 4-11> 성공적 세정혁신을 위한 추진방법.....	90
<표 4-12> 세무행정상 개선사항.....	90
<표 4-13> 세무조사의 바람직한 방향.....	91
<표 4-14> 경영안정·기술인력개발·창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92
<표 4-15>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92
<표 4-16>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	93
<표 4-17>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정도.....	94
<표 4-18>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 이유.....	94
<표 4-19>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95
<표 4-20>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96
<표 4-21> 중소기업(제조업)의 기술개발투자액 비교.....	101
<표 4-22> 중소기업(제조업)의 기간별 기계장치 투자액.....	102
<표 4-23>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의 변천.....	105
<표 4-24>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105

< 그림 차례 >

<그림 2-1> 지역별·업종별 감면율	64
<그림 4-1>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 응답자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요구.....	97
<그림 4-2> 투자세제지원의 중복적용 및 감면율 확대 응답자의 활용정도와 제도활용.....	103
<그림 4-3> 조세관련 정보취득방법 비중추이	120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ax Support System o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in Korea

Lim, Chai-Hwan
Department of Shipping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Today, the import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 the leader in creating jobs and technical innovation is being reappraised, and the needs of its nurture is brought into relief internationally. Boosted by continuous revitalization policy after the economic crisi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is taking much space in national economy such as employment, exportation, production and added value creation, too. Hence the government has been enforcing many taxation support system as to elevate competitive power and intensify industrial structur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not only is being the driving force of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ut also i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with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balanced distribution of income and stabilization of employment.

Korea has as many system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as other countries.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various tax supporting

system to encourage the economy adapting to the changes of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environment through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cultivating growth potential and improving industry structure. But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of Korea are not well aware of tax information, have difficulty in entering accounts and are hard to acquire professionals of tax area. So they are hard to make use of tax supporting system efficiently.

The relative importance and rol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e national economy is increasing.

These are to prove the just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aring. It is necessary that the efficient and practical support is made for developing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support means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the rationality of system, the apt support of finance and the support of tax system.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analysis the problem has the present tax support system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of this problem limited the part of tax support system.

Making full us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ax incentive every year turned out to be beneficial for the financial position improvement. The primary reasons for the low application of tax incentives are that some applicants are not qualified for the program and that others are not aware of the details of the system and its application processes.

This research, on the ground of this analysis, has made several suggestions: the extension of application range, the simplification of tax support system and its application through relaxing restrictions of tax reduction, and the automatic program to calculate the tax saving

relating 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centive systems.

This study is valuable to the effect that we have evaluate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centive systems of the past and have ma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in the future, verifying that the effect of tax incentive programs has increased since the economic crisi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은 나라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하고’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5항)’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을 기초로 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 및 실시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에 있어서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 수출 및 부가가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원동력이며 고용의 안정과 소득의 균형배분을 통한 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기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

첫째, 고용기회의 창출 기능이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많은 취업자를 흡수한다.

둘째, 다양한 소비욕구의 충족 기능이다. 소품종을 대량생산하는 대기업보다 다품종 소량생산인 중소기업이 낱알이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하는데 적합하다. 중소기업은 소비자의 변화무쌍한 수요 변화에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셋째,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기능이다. 성공적인 중소기업의 특징 중 하나는

1) SERI.org, <http://seri.org/kz/kzKsosv.html?no=14882&ucgb=KZKSOS>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제품 및 기술,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기여한다.

넷째,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능이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특산물을 육성한다거나 지역의 전통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유익한 기능을 담당한다.

다섯째,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기능이다. 전문화된 중소기업은 부품이나 중간재의 국산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고 경제 전반의 신축성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부품이나 중간재의 수입 유발적인 고용구조를 시정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미래 사회는 보다 더욱 빨리 변화할 것이고 복잡성도 높아져 그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일 것이다. 또한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져 그들의 욕구가 다양화, 세분화, 개성화 되어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제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대형기술보다는 섬세한 소형 기술개발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이렇듯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상당히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의 고도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생산, 소비, 유통, 소득분배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이점들을 낳는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하여 금융지원·조세지원 등의 여러 방면으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조세지원제도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조세부담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소기업에 대하여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 여러 종류의 조세혜택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도로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아직도 이러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소극적이고 활용실태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²⁾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선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선진국과의 조세지원제도의 비교를 통한 조세지원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이용 실태를 기간별로 조사·분석하여 조세지원제도의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조세지원내용은 정부간행물과 선행연구논문, 각종의 인터넷 자료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이용 실태분석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한 “중소기업 세제·세제 이용 및 애로실태분석” 자료와 자체 이용실태설문조사(2011년 09월)를 사용하였고 이를 기초하여 기간적 요구비율을 통한 현재 및 과거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199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현황 및 정보취득의 애로사항을 기간별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 앞으로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의 연구를 하였다.

2) 김주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한국상업교육학회, 2004), p.194

제2장 중소기업 및 조세지원제도의 국내외 현황

제1절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1.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의 개념을 정의할 때 그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획일적인 개념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은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규모란 종업원 수, 총 자산, 자본금, 매출액 등의 양적 기준과 경제적 지원정책, 기업의 사회활동 형태, 생산품의 라이프 사이클, 기업경영의 동기 등과 같은 질적 기준을 말한다.³⁾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정의를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특성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적 위주의 정의로 일관해 오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미국과 같이 양적, 질적 기준을 절충한 형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헌법 제123조 제 3항에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관계법, 즉 중소기업기본법(1996)의 17개의 법에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보장하도록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보호, 육성을 보장 받아야할 중소기업 개념을 설정하는 기준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여건에 따라 그 대상이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

3) 김안호, 「한국경제의 이해」, 도서출판 두남, 2002, p.225~226.

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양적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서 기업의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4)

2. 중소기업의 범위

세법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기준 이내 또는 요건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표 2-1>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4) 고규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연구」, (경영행정학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2005), p.4.

자료: 중소기업청, '2011 중소기업확인메뉴얼'

주: 상시 근로자 수는 미만이며, 자본금(매출액)은 이하임에 유의

주: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이 둘 다 범위를 벗어나야 중소기업에서 제외

주: 분류부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부호를 따름(<http://kostat.go.kr/kssc>에서 확인)

<표 2-2> 중소기업 상한기준

적 용 기 준	상 한 기 준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자기자본(자산총액 - 부채총액)	500억원 미만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자료: 중소기업청, '2011 중소기업확인메뉴얼'

주: 자기자본 및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은 2012.1.1부터 적용되는 기준임에 유의(관계회사 제도에서도 2012.1.1부터 적용)

<표 2-3> 중소기업 하향조정

업 종	종 전		변 경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대형종합 소매업	300명	300억원	200명	200억원
호텔업	300명	300억원	200명	200억원
휴양콘도 운영업	300명	300억원	200명	200억원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00명	300억원	200명	200억원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300명	300억원	200명	200억원

자료: 중소기업청, '2011 중소기업확인메뉴얼'

주: 업종별 규모기준이 하향 조정된 경우(2011.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3.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

세법상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사업(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소기업해당사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그리고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3-1 종업원 수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이내이어야 한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되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 / (직전 과세연도의 월수)

▶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 /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주: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사하지 아니한다.

3-2 자기자본 기준

자기자본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타기업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말한다.

3-3 매출액 기준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는 중 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본금 500억원 이상, 자산 5천억원 이상,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를 중소기업 졸업제도라고 한다.



4. 선진국 중소기업의 범위

주요 선진국가의 중소기업 범위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소기업(small business)이라 하여, 공업에서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지는 기업, 도매업에서는 20만 달러 이하, 소매업에서는 5만 달러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수공업(Handwork)이라는 명칭 하에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업·광업 및 운송업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300명 이하, 자본금 5,000만 엔 이하의 기업을 뜻한다. 상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50명 이하, 자본금 1,000만 엔 이하의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소기업이란 매출액이 560만 파운드를 넘지 않고, 50명 이하의 직원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중기업이란 매출액이 2280만 파운드 이하이고 25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⁵⁾



5)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표 2-4> 선진국 중소기업의 범위

국명	업종	구분	비고
일본	제조업, 기타	상시고용 종업원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도매업	상시고용 종업원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소매업	상시고용 종업원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서비스업	상시고용 종업원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대만	제조업, 건설업	납입자본금 8천만 NT\$ 미만 또는 고용인 200인 미만	
	광업, 토석채취업		
	유통, 운송서비스	전년도 영업총수익 1억 NT\$ 미만 또는 고용인 50인 미만	
	기타서비스업		
중국	공업	종사자수 2,0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30000만원(元) 이하 또는 자산총액 40000만원(元) 이하 임. 단, 중형기업은 종사자수 300인 이상, 매출액 3000만원(元) 이상, 자산총액 4000만원(元) 이상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건축업	종사자수 3,0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30000만원(元) 이하 또는 자산총액 40000만원(元) 이하임 단, 중형기업은 종사자수 600인 이상, 매출액 3000만원(元) 이상, 자산총액 4000만원(元) 이상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도매업	종사자수 2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30000만원(元) 이하임 단, 중형기업은 종사자수 100인 이상, 매출액 3000만원(元) 이상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소매업	종사자수 5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15000만원(元) 이하임 단, 중형기업은 종사자수 100인 이상, 매출액 000만원(元) 이상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교통운수업	종사자수 3,0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30000만원(元) 이하임 단, 중형기업은 종사자수 500인 이상, 매출액 3000만원(元) 이상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우정업	종사자수 1,0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30000만원(元) 이하임 단, 중형기업은 종사자수 400인 이상, 매출액 3000만원(元) 이상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주택임대·음식점업	종사자수 8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15000만원(元) 이하임 단, 중형기업은 종사자수 400인 이상, 매출액 3000만원(元) 이상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구명	업종	구분	비고
미 거	제조업	세부업종별로 종업원수 500인(750, 1,000, 1,500인)미만	2008. 8월 세부업종별 중소기업범위 변경
	광업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600만 달러 미만 또는 종업원수 500인 미만	
	건설업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600만 달러 (1,200, 1,700, 2,850만 달러)미만	
	도매업	종업원수 100인 미만	
	소매업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600만달러(750, 850, 950, 1,050, 1,100,1,950, 2,100, 2,300, 2,450만달러) 미만	
	숙박,음식업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600만달러(1,750만달러) 미만	
	예술,문화,오락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600만달러 미만	
	의료, 복지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600만달러(850, 1,150, 2,900만달러) 미만	
	교육서비스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600만달러(2,150, 3,000만달러) 미만	
	기타 서비스	세부업종별로 연간매출액 400만달러(600, 1,200, 2,100만달러) 미만	
중 거	전 산 업	소기업 (Small company)	매출액 5백6십만 파운드 미만, 종업원 50인 미만
		소그룹 (Small group)	매출액 5백6십만 파운드 미만(합산액 6백7십2만 파운드 미만), Balance sheet total 2백8십만 파운드 미만, 종업원 50인 미만
		중기업 (Medium-sized company)	매출액 2천2백8십만 파운드 미만, 종업원 250인 미만
		중그룹 (Medium-sized group)	매출액 2천2백8십만 파운드(합산액 2천7백3십6만 파운드)미만, Balance sheet total 2백8십만 파운드(합산액 3백3십6만 파운드)미만, 종업원 250인 미만
별 관 지 업	전 산 업	소기업	연평균 종사자 50인 미만 연간 매출액(turnover) 1천만 유로미만 또는 직전년도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만 유로 미만
		중기업	연평균 종사자 250인 미만 연간 매출액(turnover) 5천만 유로 미만 또는 직전년도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4천3백만 유로 미만
대 거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에너지수도 공급업	연간매출액 1억 DM 이하	
	소매업, 무역업, 전문직업, 운송통신업, 기업서비스업	연간매출액 2.5천만 DM 이하	

국명	업종		구분	비고
캐나다	제조업	소기업	종사자 수 100인 미만	
	서비스업		종사자 수 50인 미만	
	전산업	중기업	종사자 수 500인 미만	
호주	전산업	소기업	종사자 수 20인 미만	
		중기업	종사자 수 200인 미만	
	농업	소기업은 농업생산액이 \$22,500 ~ \$400,000에 상당해야 함		
프랑스	전산업	소기업 (Micro-entreprise)	근로자수 10인 미만, Balance sheet total 2백만 유로 미만	
		중기업 (PME)	근로자수 10인 ~ 249인, 매출액 5천만 유로, 자산 4천3백만 유로 미만	
		대기업 (Grand-entreprise)	근로자수 250인 이상, 매출액 5천만 유로, 자산 4천3백만 유로 이상	
		소그룹 (Petit groupe)	근로자수 500인 미만, 매출액 5천만 유로, 자회사 5개 미만	
		대그룹 (Grand-groupe)	소그룹외	
EU	전산업	Micro-sized	Number of workers 0-9인, Annual turnover < Euro 2백만 또는 Annual balance sheet < Euro 2백만	
		Small-sized	Number of workers 10-49인, Annual turnover < Euro 10백만 또는 Annual balance sheet < Euro 10백만	
		Medium-sized	Number of workers 50-249인, Annual turnover < Euro 50백만 또는 Annual balance sheet < Euro 43백만	

- 주 : 1. 일본의 경우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은 소규모기업이 종사자수 5인 이하이며, 제조업 등 기타 업종은 소규모기업이 종사자수 20인 이하임
2. 미국의 경우 영세기업(Very Small-Sized)은 종사자수 20인 미만 소기업(Small-Sized)은 종사자수 20~99인, 중기업(Medium-Sized)은 종사자수 100~499인 이하임.

3. 독일의 경우 '98년까지의 정의이며, 2005년 1월부터 EU 중소기업 범위에 준함.

자료 : 1. 일본 : 일본중소기업기본법(中小企業基本法)

2. 대만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dministra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3.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

4. 미국 : U. 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Table of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 Matched to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Codes」

5. 영국 : BIS, 「SME statistics for the UK and Regions」

6. 독일 : 독일 중소기업연구원(Institut für Mittelstandsforschung)

7. 폴란드 : PAED,
「Defini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8. 캐나다 : Industry Canada, 「Key Small Business Statistics」

9. 호주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Small Business in Australia 2001」

10. 프랑스 : 프랑스혁신청,
「2007 Rapport OSEO sur l'volution des PME」

11. EU : EU, 「Observatory of European SMEs」

제2절 국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비교

1. 국내 중소기업의 현황

<표 2-5> 법인의 자산규모별 및 사업기간별 통계

중소기업 33.5만개(79.6%), 일반법인 8.5만개(20.4%)

자산규모별	법인(개)	비중	누적비중
총 계	419,420	100.0%	-
100억원 이하	393,871	93.9%	93.9%
200억원 이하	8,881	2.1%	96.0%
500억원 이하	8,116	1.9%	98.0%
1,000억원 이하	4,094	1.0%	98.9%
5,000억원 이하	3,563	0.8%	99.8%
5,000억원 초과	895	0.2%	100.0%

개업일 기준	법인(개)	비중	누적비중
총 계	419,420	100.0%	-
10년미만	307,260	73.3%	73.3%
10년이상 15년미만	60,056	14.3%	87.6%
15년이상 20년미만	23,865	5.7%	93.3%
20년이상 30년미만	16,815	4.0%	97.3%
30년이상 40년미만	8,018	1.9%	99.2%
40년이상 50년미만	2,263	0.5%	99.7%
50년이상	1,143	0.3%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0 국세통계연보(09년 신고기준)'

주: 자산규모별 통계 및 영업개시일별 통계

<표 2-6> 우리나라 제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비중추이

제조업기준(5인이상)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체수 (개)	전체	118,240	119,132	112,576	111,722
	중소기업 (비중,%)	117,569 (99.4)	118,506 (99.5)	111,957 (99.5)	111,126 (99.5)
	대기업 (비중,%)	671 (0.6)	626 (0.5)	619 (0.5)	596 (0.5)
종사자수 (명)	전체	2,890,204	2,861,934	2,796,038	2,798,297
	중소기업 (비중,%)	2,192,395 (75.9)	2,199,802 (76.9)	2,134,699 (76.3)	2,150,451 (76.8)
	대기업 (비중,%)	697,809 (24.1)	662,132 (23.1)	661,339 (23.7)	647,846 (23.2)
생산액 (억원)	전체	9,063,813	9,890,622	11,675,967	11,678,402
	중소기업 (비중,%)	4,474,499 (49.4)	4,816,054 (48.7)	5,420,197 (46.4)	5,558,547 (47.6)
	대기업 (비중,%)	4,589,314 (50.6)	5,074,569 (51.3)	6,255,770 (53.6)	6,119,855 (52.4)
부가가치 (억원)	전체	3,249,104	3,449,638	3,848,731	3,926,600
	중소기업 (비중,%)	1,659,417 (51.1)	1,746,770 (50.6)	1,895,164 (49.2)	1,981,962 (50.5)
	대기업 (비중,%)	1,589,686 (48.9)	1,702,869 (49.4)	1,953,567 (50.8)	1,944,638 (49.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에서 재편 가공)

자료: 통계청,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각 년도

주: 중소기업의 범위는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경제의 고도성장과 대형화추세는 생산성의 향상과 기술혁신에 앞서 기업의 대
단위화를 촉진시켰고 한 동안 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
어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그늘 밑에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여러면에

서 열위를 면치 못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 상호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존립기반을 형성하고 있거나 대기업 분야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존립을 유지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전략이 중화학분야로 전환되어 산업구조가 점차로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부분품의 결합도가 높은 기계, 선박, 자동차, 전자산업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업체제를 통한 생산적연대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전문화, 계열화, 협동화, 수출산업화의 형태로 기업활동을 수행하여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존립의 필요성과 역할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다음 <표2-6>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도 중소기업의 사업체수는 전체 111,722개 중 99.5%인 111,126개이며, 종업원 수는 2,798,297명 중 76.8%인 2,150,451명이며, 생산액은 전체 11,678,402억원 중 47.6%인 5,558,547억원이고, 부가가치는 전체 3,926,600억원 중 50.5%인 1,981,962억원이 된다.

이 표에서 보면 중소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육성은 곧 우리나라의 성장의 동력으로써 필수적이다.

한편,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산업구조의 고도화추세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구조적 취약성을 탈피하여 점차로 단순저가공업에서 고가공업으로 이행되어 가고 있으며, 중화학공업 분야에도 비교적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가공 및 조립분야의 산업이 적정생산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소재부문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저가 가공 산업으로 부터 이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도움을 주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국내외 중소기업의 현황비교

<표 2-7> 주요국별 중소기업의 비율

구 분	한국(2009)	일본(2009)	미국(2007)	영국(2009)
사업체수 (개)	111,126 (99.5)	232,040 (98.6)	296,135 (89.3)	302,650 (99.8)
종사자수 (천명)	2,150 (76.8)	5,323 (69.3)	5,918 (44.4)	1,901 (65.4)
통계기준	종업원 5명~300명미만	종업원 4명~300명미만	종업원 1명~500명미만	종업원 1명~500명미만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및 발전방향의 변화에 부응하여 적절하게 전개된 중소기업정책의 성과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를 외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은 과거에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으나, 현재는 중소기업의 기반이 견실하다는 대만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일본과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⁶⁾

산업이 높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물론 특히 중소기업의 기반이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체제하에 속하는 경제는 어떤 나라이건 대기업만으로 유지, 발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은 물론 미국, 서구 등 대기업이 큰 힘을 가진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을 경제 활성화의 동인으로 보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제조업분야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활력상실과 업체수의 감소를 영국병의 주인으로 보고 있는가하면 지난 81년을 계기로 선진국병 증상이 나타난 서독에서도 활력있는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정부부문과 대기업부문

6) 김인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기간별 흐름에 따른 활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 6.

의 비대화에 따른 경제의 경직화로 잠식되고 그 결과 시장기능이 저해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과 활력을 저하시켰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고기술, 첨단산업분야를 맡은 선구적인 다수의 중소기업이 미국경제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강한 중소기업의 존재에 힘입고 있음에 기인한다.

우리의 경우 중소기업은 고용 및 부가가치의 면에서는 물론 또 시장경제면에서 큰 비중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 조립제품의 부품을 생산하는 저변기업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강약은 경제 전체의 균형성장과 대외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제3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현황

1.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

<표 2-8>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

	법조항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의 2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제6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제8조의 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12조	특허권 등 취득가액의 7%세액공제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7%, 일반법인은 3%)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제30조의 4	고용증대세액공제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의 2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 2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제130조	90년 이후 신설사업장 대체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허용
제132조	최저한세 적용우대(적용률 7%, 일반법인은 10%, 11%, 14%)

2. 법인세법상 지원제도

<표 2-9> 법인세법상 지원제도

	법조항
제25조	접대비 한도액(기본금액 1,800만원, 일반법인 1,200만원)
(령)제19조의 2	대손처리(부도발생 6월경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제64조	분납기간 우대(2개월, 일반법인은 1개월)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
제76조의 22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만이 적용되는 세금감면과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이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상 열거되어 있는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 20건과 법인세법상 지원제도 5건이며 <표2-8>, <표2-9>로 정리된다.

3. 지원내용별 분류

<표 2-10>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법조문	감면내용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4년간 50%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세(소득세)의 5%~30%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할 때 세액공제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할 때 4년간 50%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장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세액감면

<표 2-11>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법조문	감면내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정보화사업 지원금에 대한 손금산입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설비투자지원, 기타우대지원으로 나뉘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설비투자지원의 감면내용은 <표2-10>, <표2-11>로 정리된다.

제4절 선진국의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현황

1. 미국의 조세지원제도

<표 2-12> S 법인제도

<p>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법인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법인이어야 하며 S법인으로 신청하여야 함 ·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인, estate, 신탁, 파트너십 등이고 법인은 주주가 될 수 없음 · 미국 내 거주자만 주주가 될 수 있음 ·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 · 주주의 수는 100명 이하(2004년까지는 75명 이하)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소규모 법인에 대해 법인세 과세하지 않고 해당법인의 손익을 개인 주주에게 출자비율로 배분하여 개인소득세 과세 - C법인의 소득(earning)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고 그 소득이 개인에게 배당될 때 개인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므로 두 번 과세되는 데 반해 S법인은 주주단계에서 한번 과세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13> 사업용 상각자산의 비용처리

<p>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p>	<p>기업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자산구입 금액한도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에게 적용가능</p>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일정금액까지 비용으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은 2002년 24,000달러였으나 2003년부터 100,000달러로 증가한 후 2007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한 후 2008년부터는 25,000달러로 감소 · 2004년 102,000달러, 2005년 105,000달러, 2006년 108,000달러, 2007년 112,000달러 - phase-out rule에 따라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비용공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공제액은 0이 됨 · 2004년의 경우 자산의 구입가격이 512,000달러를 초과하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액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므로 2003년 400,000달러, 2004년 410,000달러, 2005년 420,000달러, 2006년 430,000달러, 2007년 450,000 달러로 증가하고 2008년 이후부터는 200,000달러로 감소
--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14> 최저한세 적용배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초기 매출액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음 ○ 적용배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첫 번째 과세연도 - 첫 과세연도를 포함한 3년 매출 평균이 5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이후 3년 평균 매출이 75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적용배제 유지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15> 창업비(start-up & organizational costs) 상각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2004년 10월 22일 이후 창업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시 발생한 비용을 5,000달러까지 공제 - 적격지출이 50,000달러를 초과하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달러에서 감소함 - 공제하지 못한 비용은 180개월에 걸쳐 상각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16> 소기업 주식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의 부분적 과세면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 5천만 달러 이하인 C법인 - 대상이 되는 소기업주식(QSBS)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한 소기업주식: 1993년 8월 10일 이후 발행한 주식으로 납세자에 의해 최초 발행한 주식이 취득된 것 · 적격한 소기업: C 법인에 의해 발행된 주식으로
--------------------------	---

	<p>주식발행 직전 총자산은 5천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함</p> <p>· 사업 활동요건: 법인 자산의 80% 이상이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적격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함</p> <p>* 적격한 사업은 용역제공업, 금융보험업, 농림업, 숙박업 등임</p>
지원내용	<p>○ 비법인 납세자(파트너십, LLCs, S법인)는 5년 이상 보유한 QSBS(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의 판매로 발생한 이득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제외</p> <p>- QSBS가 empowerment zone에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것이라면 60%가 과세대상에서 제외(IRC § 1202(a)(2))</p> <p>- 과세면제 한도금액: 기업이 발행하고 처분한 해의 QSBS의 조정된 세무가액(basis)의 10배 또는 천만달러에서 전년도에 배제했던 이득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IRC § 1202(b))</p> <p>- 공제하지 못한 비용은 180개월에 걸쳐 상각</p>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17>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파트너십(partnership)
지원내용	<p>○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지원</p> <p>- 도관이론에 따라 파트너십의 수익은 개인에게 분배되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이중과세 배제</p> <p>○ 파트너에 대한 조세지원</p> <p>- 파트너십의 손실이 파트너에게 인계되므로 다른 과세소득을 조합의 손실과 상계가능</p> <p>- 손실의 배분은 지분의 조정된 기초가액까지 허용</p>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18>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 적용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과거 3년 총매출 평균이 5백만달러 이하인 기업
지원내용	<p>○ 연방세법은 다음의 기업에 대해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적용</p> <p>- C 법인, C 법인이 파트너로 있는 파트너십,</p>



	<p>수익사업이 있는 신탁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을 만족하고 조세회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 적용 가능 · 농장 및 임업(farm or tree raising) · 적절한 인적서비스 법인 · 과거 3년 총매출 평균이 5백만달러 이하인 기업 (C법인 포함) - 최근에 IRS 행정예규(rulings)에 의해, 과거 3년 매출평균이 백만달러 이하인 sole proprietorship, S법인, 파트너십과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평균 매출이 천만달러 이하인 기업에 의해 현금주의 회계방식이 사용됨 - 손실의 배분은 지분의 조정된 기초가액까지 허용
--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19> 퇴직연금설계비용 세액공제

<p>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p>	<p>소기업</p>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을 위한 새로운 퇴직연금 설계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적절한 연금을 설계한 처음 3년간 매년 적격비용 1,000달러의 50%를 세액공제 - 적절한 비용이란 연금의 관리 및 관련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통상적이고 필수적(ordinary and necessary)으로 발생한 비용임 ○ 세액공제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에 5,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은 종업원이 100인 미만인 기업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2. 영국의 조세지원제도

<표 2-20> 자산에 대한 비용공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다음 조건 중 최소한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것 ○ 중기업(Medium Business)요건 ① 연매출액(Annual turnover) : 11.2백만파운드 이하 ② 자산총액(Assets) : 5.6백만파운드 이하 ③ 종업원 수 : 250인 이하 ○ 소기업(Small Business)요건 ① 연매출액(Annual turnover) : 2.8백만파운드 이하 ② 자산총액(Assets) : 1.4백만파운드 이하 ③ 종업원 수 : 50인 이하
지원내용	○ 공구 및 기계류 구입비용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당해년도에 소득(taxable profit)에서 공제(First-year allowances : FYAs) - 소기업 : 공제율 50% - 중기업 : 공제율 40%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주: 2008년 4월부터 첫해년도 공제(FYAs)는 공장과 기계류에 대한 첫 £50,000 투자금액에 대한 연간 투자 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로 변경 예정.

<표 2-21> 연구개발비(R&D)에 대한 비용공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EU 규정과 동일) ① 연매출액 : 50백만파운드 이하 ② 대차대조표 합계 : 43백만파운드 이하 ③ 종업원 수 : 250인 이하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R&D비용의 150%를 공제(대기업은125%) ○ 과세소득이 없으면 R&D비용의 일부에 대해 현금으로 payable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음 - 중기업 : 공제율 40%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주: 2008/2009년에는 주정부의 지원승인이 있으면 175%를 공제할 수 있도록 입법할 예정.

<표 2-22> 기업투자계획

<p>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의 고위험 비상장회사 (small higher-risk unquoted trading companies) - 영국 소재일 필요는 없음 - 다른 회사의 지배하에 있지 않을 것 - 비상장회사일 것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일정 유형의 비상장 소규모회사(small company)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 ① 투자부분에 대한 20% 소득세율 적용(저율과세) ② 주식처분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 신청자격 있는 개인(qualifying)이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대상주식(eligible shares)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 지원을 받기 위한 필요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EIS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자본이득은 투자한 전액을 받을 수 있음 - 이미 EIS에 의한 소득세 지원을 신청하고 EIS 지분의 처분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손실은 투자자가 자본이득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손실로 처리할 수 있음 ③ 다른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 다른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세는 EIS주식을 출자함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됨 - 이러한 자본이득세는 EIS 주식의 처분시 또는 주식발행 후 3년 안에 영국 거주자가 아니게 된 때에 납부기한이 도래함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23> 경감 법인세율 적용

<p>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회사(small company) - 특별한 정의규정은 없지만, 소기업 (small business)의 범위를 충족해야 함⁷⁾ - 과세소득(profit)이 £0~£1,500,000에 속하는 회사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현재 법인세율 ① 0~300,000파운드 : 19% ② 300,000~1,500,000파운드 : 19~30%까지 sliding 세율 ③ 1,500,000파운드 이상 : 30% ①②는 소규모회사만 적용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주: 재무부 발표(Budget 2007 : press notices)에 따르면, 세구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007년), 21%(2008년), 22%(2009년)로 점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임. 한편 소규모 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은 2008년부터 30%에서 28%로 인하될 예정임.

<표 2-24> 부가가치세 산출시 저율 적용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small business) - 차년도 연간매출액 15만 파운드 미만(부가가치세액 제외) - 차년도 연간사업소득 18.75만 파운드 미만 (부가가치세액 포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매입매출건마다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기입할 필요가 없음 ○ 부가가치세는 차년도 연간매출액에 영역별 단일세율 (flat rate)을 적용하여 계산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세율은 17.5% - 영역별 'Flat rate' 예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멤버쉽 조직, 술집, 도매식품 : 5.5% 농업서비스, 식품제조, 인쇄, 수리 : 7.5% 광고, 폐기물관리, 호텔, 출판 : 9.5% 보안, 조립 철제품 생산 : 10% 동물관리, 영화·라디오·텔레비전·비디오 생산 : 10.5% 컴퓨터수리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또는 언론 등 : 11% 금융서비스 : 11.5% 회계 또는 기장, 컴퓨터·IT 컨설팅, 법률서비스 : 13% ○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한 첫 해에는 해당 단일세율에서 1%를 감면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주: 재무부 발표(Budget 2007 : press notices)에 따르면, 세구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007년), 21%(2008년), 22%(2009년)로 점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임. 한편 소규모 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은 2008년부터 30%에서 28%로 인하될 예정임.

7) 영국국세청, A Review of Small Business Taxation - A Technical Note By The Onland Revenue March 2001

8) 영국 국세청, Notice 733: Flat rate scheme for small businesses, 2007, pp.10-12

3. 일본의 조세지원제도

<표 2-25> 엔젤세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 특정 중소기업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설립 10년 미만)의 중소기업자(대규모회사의 자회사 제외)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 시험연구비 등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초과(설립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업은 5% 초과) 혹은 전기와 전전기 매출의 증가율 혹은 제1기부터 전기까지의 매출 평균 증가율이 25%가 넘고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투자 시점에서 1/6이상 받은 회사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자가 당해 주식에 투자 또는 양도 등을 함에 따라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의 경우 2003년 4월 1일 이후 취득하는 특정 중소기업주식에 관해 동일연도분의 주식양도이익을 한도로 소득세의 양도소득 계산상 주식양도차익에서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액을 공제(단, 특정중소회사주식의 취득비용에서 해당공제액은 감액)(조특법 §37의 13) - 양도 등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1/2 상당액(양도일에 있어서 3년 초과 보유하는 주식(2000.4.1~2009.3.31 사이에 취득한 것에 한함))(조특법 §37의 13의3) - 양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익년 이후 3년간 이월하여 공제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26> 산업경쟁력을 위한 정보기반강화세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대상 자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스템 - 데이터베이스관리 소프트웨어 - 방화벽(기본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관리 소프트웨어와 함께 취득한 것)
--------------------------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원 내용 - 적용대상 취득가액 합계액 · 개인사업자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법인: 300만엔 이상(리스는 420만엔) · 자본금 1억엔 초과 10억엔 이하 법인: 3,000만엔 이상 · 자본금 10억엔 초과 법인: 1억엔 이상 - 취득의 경우에는 기준취득가액(취득가액의 70%)의 10% 세액공제 또는 기준취득가액(취득가액의 70%)의 50%의 특별상각 ·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액 등의 20%,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 - 리스의 경우, 리스비용 총액의 42%에 대해, 10%의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액등의 20%,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 - 적용기한: 2006.4.1.~2008.3.31.
-------------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27> 연구개발촉진세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자본금 1억엔 이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연구비 총액에 관한 세액공제제도 - 당해 기업의 시험연구비 비율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소득세액)에서 공제 · 시험연구비 비율 10% 이상: 10% · 시험연구비 비율 10% 미만: 8%+시험연구비비율×0.2 · 중소기업(자본금 1억엔 이하): 12% - 단, 세액공제액은 법인세액(소득세액)의 20% 상당액을 한도로 하며, 공제액한도 초과액은 요건을 만족하면 1년간 이월 가능 - 시험연구비 비율이란 당해연도의 시험연구비를 매출액(당해연도 이전 3년을 포함한 4년간의 평균매출액)으로 나눈 것 ○ 시험연구비 증가액에 관한 세액공제제도 - 시험연구비 총액에 관한 세액공제제도에 추가하여, 당해 기업의 시험연구비 증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소득세액)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간: 법인은 2006.4.1~2008.3.31. 개인은 2007~2008년 각연도 - 시험연구비 증가액이란 당해 연도의 시험연구비에서 과거 3년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의평균액 (비교시험연구비)을 공제한 잔액을 말함
--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28> 인재투자촉진세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청색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자본금 1억엔 이하인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 적용대상 교육훈련비 - 종업원의 직무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의 습득,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종업원이 받는 경우에 회사가 지출한 비용
지원내용	감세액 계산방법 - 기본제도: 증가액의 25%를 감세 · 교육훈련비가 전 2개 사업연도의 교육훈련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기의 법인세액(개인사업자는 소득세액) 에서 공제 - 중소기업특례: 총액의 최대 20%를 감세 · 중소기업(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대기업의 자회사 제외) 또는 개인사업자)은 교육훈련비의 총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기의 법인세액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기본제도와 선택적으로 적용) - 세액공제 한도액은 법인세액(소득세액)의 10% 상당액 - 적용기한: 2005.4.1~2008.3.31 (개인사업자는 2006, 2007, 2008 각 연도 분)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29> 사업승계원활화를 위한 세제조치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특정 소규모택지를 상속한 개인사업자·중소법인 소유주 - 거래상장이 아닌 비상장주식을 상속한 중소기업의 소유주
지원내용	○ 특정소규모택지(사업용·주거용)를 상속한 경우 상속세 평가액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까지의 특정사업용 택지와 240㎡까지의 특정 주거용 택지는 평가액의 80%가 감액되는 감세특례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세 경감 - 비상장주식을 상속한 개인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3년 이내에 발행회사에 상속주식을 매각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0%로 과세
--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30>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자본금 1억 엔 이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를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에 있어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공제 등의 각종 공제 외에, 종업원급여공제, 청색신고특별공제, 소규모기업공제 부금공제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경감됨 ○ 법인가업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대해 경감세율(소득800만엔까지 22%)이 적용되는 것을 비롯하여 교제비의 일부(연400만엔까지 교제비 지출 중 9할까지) 손금산입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협동조합 등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등 특별법인은 법인세율이 보통법인(30%)보다도 경감(22%)되는 것 외에 조합사업의 이용분량배당의 손금산입, 조합가입금의 익금불산입, 보유소득의 손금산입 등의 제도가 있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31>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설비·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치로 1대 또는 1기의 취득가액이 160만엔 이상(리스의 경우는 리스비용의 총합이 210만엔이상)인 것 - 특정의 기구·비품(전자계산기, 디지털복합기)으로 1대 또는 1기, 또는 동일 종류의 여러 대의 합계
--------------------------	---

	<p>취득가액이 120만엔 이상(리스의 경우는 리스비용의 총합이 160만엔 이상)인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의 소프트웨어(합계 취득가액이 70만엔 이상(리스의 경우는 리스비용 합계가 100만엔 이상) - 보통화물자동차(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 내항선박(단 취득가액의 75%가 대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 7%의 세액공제 또는 30%의 특별상각(단, 자본금이 3천만엔을 초과하는 법인은 특별상각만 적용) ○ 리스: 리스비용 총액의 60%에 대해, 7%의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008.3.31.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32> 중소기업기반강화세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p>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대상 ①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단, 풍속영업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제외) ②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혁신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타 분야 제휴신사업분야 개척계획의 인정을 받은 자 중 일정의 성장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촉진법에 의거한 계획의 인정을 받은 자 중 일정의 기준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p>* ②, ③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이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①, ②, ③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치 1대 또는 1기의 취득가액이 280만엔 이상(리스의 경우는 리스비용의 총액이 370만엔 이상)의 것 - 상기 ①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비품(전자계산기에 대해서는 16-32비트, 주 기억용량 32메가바이트 이하의 것에 한함) 1대 또는 1기의 취득가액이 120만엔 이상(리스의 경우는 리스비용의 총액이 160만엔 이상)의 것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의 경우: 7%의 세액공제 또는 30%의 특별상각 ○ 리스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비용 총액의 60%에 대해, 7%의 세액공제 - 2008.4.1. 이후는 현행의 리스세액공제는 폐지(소유권이전 외 finance 리스계약에 의한 것은 취득에 의한 세액공제 가능) ○ 적용기한: 2009. 3. 31.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33> 중소기업의 소액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의 손금산입 특례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 등 ○ 대상 자산 - 취득가액이 30만엔 미만의 감가상각자산
지원내용	○ 취득가액 전액을 손금산입 ○ 특례대상이 되는 손금산입액의 상한은 연간300만엔 ○ 적용기한: 2008. 3. 31.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34>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정지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시점의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前 사업연도 종료시 자기자본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설립 후 10년 이내의 신사업창출촉진법의 중소기업자 ○ 신사업창출촉진법의 인정사업자(신사업분야개척을 실시하는 자)
지원내용	○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제도란 동족회사(3인 이하의 주주가 전체 주식 보유가 50%를 초과하는 회사)가 내부유보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상기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유보금 과세가 정지됨 - 세율은 유보금이 연 3,000만엔 이하인 경우 10% 연3,000만엔~1억엔은 15%, 연 1억엔 초과는 20%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4. 대만의 조세지원제도

<표 2-35> 토지증치세의 균등(平均) 납부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간접지원) - 회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인정표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가 공업구에서 중소기업에 토지를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은 납세담보로 사용할 수 있음 ○ 투자자가 납부해야 할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는 그 토지투자를 한 연도부터 5년으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납부할 수 있음 ○ 출자한 토지는 중소기업의 자가 사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함 - 만약 자가 사용에 제공되지 않거나 재양도시에는 미납한 토지증치세를 투자자가 일시에 납부해야 함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36> 특정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토지증치세 최저과세구간의 세율 적용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회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인정표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다음 원인 중의 하나로, 공장을 공업구·도시계획공업구 또는 본 조례 시행 전에 투자장려조례(獎勵投資條例)에 규정된 공업용지로 옮기면서 원래의 공장용지를 매각 또는 이전시에 납부해야 하는 토지증치세는 최저과세구간의 세율로 징수함 ① 도시계획 또는 구역계획의 실시로 인해서 그 구분사용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공장용지 ② 오염방지·공공안전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 및 보호의 필요가 있지만, 개선이 곤란해서, 자발적(적극적)으로 공장이전을 신청하고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輔導)로 이전하는 경우 ○ 위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이전해서 건설한 후 3년 내에 그 공장용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공장 이전 전에 매각했거나 이전하면서 원래의 공장용지에 대해서 감면된 토지증치세는 추가적으로 과세(補徵)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37> 연구개발·실험비용의 과세소득에서의 공제, 기기설비의 단축상각 등

<p>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회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인정표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생산기술의 개선 및 신상품의 개량을 위해서 지불한 연구개발 및 실험비용은 당해연도 과세소득에서 공제(減除)가 허용됨. ○ 연구발전·실험 또는 품질검사용에 제공되는 기기설비는 그 내용연수가 2년 이상인 것은 소득세법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에 기재된 연수를 1/2로 단축해서 감가상각 함. ○ 단축후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을 하지 않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38> 유보잉여에 대한 과세

<p>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회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인정표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은 납입자본금을 한도로 잉여금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음 - 위의 한도를 초과한 잉여금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 10%의 사업소득세를 추가 과세할 수 있고 소득세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1998년 이후로 유보된 잉여금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며,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단축해서 감가상각 함. ○ 단축후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을 하지 않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 2-39> 투자손실준비금의 처리

<p>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회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 인정표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중앙재정 주관기관의 심사 및 허가를 거쳐서, 기투자총액의 20%의 범위내에서 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하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에 상당 ○ 설정한지 5년 내에 만약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설정한 준비금을 제5차년도의 수익으로 전환 처리 ○ 공사가 해산·철회·폐지·합병 또는 양도로 인해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는 투자손실준비금에 누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익으로 전환해서 처리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제5절 국내외정책현황의 유형별 비교

1. 창업 및 벤처활성화 지원제도

<표2-40> 중소기업 정책 비교(창업 및 벤처활성화 지원)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국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① 3년간 법인세 50% 감면 ② 2년 이내 취득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③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④ 5년간 사업용재산의 재산세 면제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 개인이 다음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벤처 기업·신기술사업자에 직접 또는 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고 취득한 주식 등 ② 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사업에 출자하고 취득한 주식 등 ③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투융자손실 준비금 손금산입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 기업에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융자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계산한 경우 ① 투융자금액의 50% ②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금액을 손금산입
	증권거래세 면제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증권거래세 면제

국 비	창업비공제	창업기업	적격비용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창업비 공제
	최저한세 적용배제	창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평균 매출이 500만 달러 이하인 창업기업	최저한세 적용배제, 이후 3년 평균매출이 750만 달러 이하이면 계속 적용
국 외	없음		
국 제 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설립 10년 미만의 중소기업자	개인이 시험연구비의 매출액비율이 3% 초과, 전기와 전전기 매출 증가율 또는 창업부터 전기까지 매출 평균증가율이 25% 넘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1/6 이상 받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은 1/2로 축소하고 양도손실은 3년간 이월하여 공제
대 만	투자손실 준비금	설립한지 5년 미만의 중소기업인정 표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투자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준비금에서 충당, 설정 후 5년 이내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환입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2. 연구개발 지원제도

<표2-41> 중소기업 정책 비교(연구개발 지원)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 미 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직전 4년의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초과분의 50% 또는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 세액공제 (대기업은 초과분의 40%)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취득시 취득금액의 7%세액공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
미 국	연구개발비에 대한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우대 조항 없음		
프 로 우	연구개발비 에 대한 비용공제	EU 규정에 의한 중기업 (종업원 250인 이하, 매출액 5,000만유로이 하 또는 자산 4,300만유로)	연구개발비의 150% 소득공제 (대기업은 125%)
제 제	시험연구비 세액공제제도 의 경우 중소기업 우대조항없음		
	인재투자촉 진세제	개인사업자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중 소법인	교육훈련비 총액의 20% 세액공제 또는 직전 2개 연도 교육훈련비 평균 증가분의 25% 세액공제 중 선택(한도액은 세액의 10%) (대기업은총액기준만 가능)
대 만	연구개발· 실험비용의 소득공제 및 설비의 단축상각	중소기업인정 표준에 의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실험비용 소득공제, 연구발전 등에 사용되는 설비의 내용년수 1/2로 단축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3. 설비투자 지원제도

<표2-42> 중소기업 정책 비교(설비투자 지원)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 국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사업용 자산 가액 의 20%를 손금에 산입
	투자세액 공제	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 보보호시스템설비를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3%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투자액·이용액의 7% 세액공제
	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손금산입
미 국	사업용 상각자산의 비용처리	사업용 자산 구입가격 512,000달러 미만인 기업	사업용 자산 구입가에서 112,000달러(2007 년)까지 비용으로 공제, 자산구입가격에 따라 공제액 감소, 512,000달러 초과 시 공제액 없음
영 국	자산에 대한 비용공제	중기업(종업원 250인 이하, 매출액 1,120만파운드 이하 또는 자산560만파 운드 이하), 소기업(종업원 50인이하, 매출액280만파 운드이하 또는 자산 140만파운드 이하)	공구 및 기계 구입비용을 당해연도에 소기업 50% 중기업 40% 공제

비 예	정보기반 설비	개인사업자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법인	기준취득가액(취득가액의 70%)의 10% 세액 공제 또는 50% 특별상각 연간 300만엔 이 상, 420만엔 이상의 리스비용에 적용 (자본금 1억엔 초과 10억엔 이하 법인은 3,000만엔 이상, 자본금 10억엔 초과 법인은 1억엔 이상 투자금액에 적용)
	투자촉진	개인사업자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법인	기계·장치(160만엔 이상), 기구·비품(120만엔 이상), 소프트웨어(70만엔 이상) 등의 취득(리스)시 7%세액공제 또는 30%특별상각
	기반강화세 제	자본금 1억엔 이하 중소법인	취득가액의 7% 세액공제 또는 30% 특별상 각, 리스비용 60%에 대해 7% 세액공제 기 계·장치 1대등의 취득가액이 280만엔 이하 (리스비용 370만엔 이하), 가구·비품 1대의 취득가액이 120만엔(리스비용 160만엔 이하) 에 적용
	소액감가상 각자산의 취득가액 손금산입	자본금 1억엔 이하 중소법인	취득가액 전액 손금산입(연간 300만엔 한도)
대 만	없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4. 중소기업 투자자 지원제도

<표2-43> 중소기업 정책 비교(중소기업 투자자 지원)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 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에 대한과세 특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③ 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미 국	소기업주식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의 부분적 과세 면제	총자산 5천만 달러이하의 법인	비법인 납세자가 5년 이상 보유한 적격소기업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이득의 50% 과세소득에서 제외
	소기업투자회사(SBIC)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중소기업투자법에 의해 인정된 비공개법인(과거 2년간 자산이 1,800만달러 미만이고 당기순이익이 600만달러 미만인 기업)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상소득에서 공제

미 관	특별소기업 투자회사 (SSBIC)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소기업투자 회사(SBIC)와 유사	개인 및 법인이 주식을 매각한 금액을 SSBIC의 주식 및 지분을 구입한 경우 과세이연 개인: min[연간5만달러와(50만달러-전년도까지 과세연기된 매각액)] 법인: min[25만달러, (100만달러-전년도까지 과세연기된 매각액)]
	소기업 주식투자자 에 대한 조세지원	자본금 100만달러 미만의 법인	개인이 소기업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손실을 통상손실로 공제, 최대금액은 50,000달러(부부합산신고는 100,000달러)
조 감	기업 투자계획	소규모 고위험 비상장회사(자 산 700만 파운드 이하)	① 투자액에 대한 20% 저율의 소득세율 적용 ② 주식처분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③ 다른 자산을 처분하고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계 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설립 10년 미만의 중소기업자	① 주식양도차익에서 특정중소회사주식 투자액 공제 ② 3년 초과보유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1/2 감액 ③ 양도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
대 만	없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5. 기타 지원제도

<표2-44> 중소기업 정책 비교(기타)

	지원제도	지원대상
한 국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접대비 기준금액의 추가인정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중소기업의 금융채무면제의 익금불산입 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 주주 등의 자산증여를 3년에 걸쳐 익금산입 ·자가 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을 3년에 걸쳐 익금산입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최저한세 우대(중소기업 10%, 대기업 15% 적용)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배제
미 리	파트너십	·파트너십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
	과거 3년간 총 매출평균 500만달러 이하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 적용
	전년도 5,000달러 급여수급자 100인 미만인 기업으로 연금을 최초로 설계한 기업	·연금 설계후 3년간 적격비용 1,000달러의 50% 세액공제

<p>표 비 예</p>	<p>소기업 (연간매출액 15만파운드미만 , 연간사업소득 18만7,500파운 드 미만)</p>	<p>·사업자를 등록한 첫 해에 해당세율에서 1% 감면</p>
<p>예 제 대 안</p>	<p>자본금 1억엔 이하 중소기업, 설립 후 10년 이내의 신사업창출촉진 법의중소기업자 등</p>	<p>·동족회사 유보금과세 정지</p>
<p>대 안</p>	<p>중소기업인정표 준에 의한 중소기업</p>	<p>·특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으로 인한 공장용지 양도의 경우 토지증치세 최저세율 적용 ·납입자본금을 한도로 잉여금 유보 허용</p>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세제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6. 국내외정책비교를 통한 전망

<표2-45> 한국·미국·일본·대만 중소기업 정책 비교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중소기업 정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 성장조장 -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민경제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중소기업법 - 자유경쟁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 - 개인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제약에 의한 불리함을 시정 - 기업 규모 간 격차를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발전조례 - 양호한 경영 환경의 정비 - 제조업자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 - 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 근대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중소기업 시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형 중소기업 종합 지원체제 구축 · 경쟁력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및 고도화 ·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확대 · 하도급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원, 경영지원, 정부조달 등 3가지시책이 주류를 이룸 · 금융지원은 신용보증이 중심 · 운영면에서 시장메카니즘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반강화, 구조 개혁지원, 소규모 대책이 중심 · 약한 경쟁유지, 창업지원 · 금융지원은 정부계금융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하청제도를 모델화한 중심위성 공장제도 ·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모델화한 하이테크 공업단지
산업 구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중심의 하청분업체제로 국내산업의 비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소싱을 활용 · 기업 간 관계가 유동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청분업체제에서 탈계열화의 네트워크형으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산업은 관영자본이 지배 · 수출부문에는 다수의 중소기업 네트워크에 의한 신축적 분업

자료: 김한원의,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과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방안」, 1998.

현재 국내정세는 농업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정책 방향도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소비자 욕구가 보다 고급화되

고 세분화되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빠른 기술개발 속도로 인해 제품개발주기가 크게 단축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보기술의 발전과 경제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하며, 국제화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책방향 설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은 고용, 부가가치, 지역경제에서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의 핵심적 주체가 된다는 확고한 인식 하에서 중소기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및 신산업 개척을 담당할 주체이므로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정책이 되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개선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기술 집약형 창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이 효율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제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설비, 기술의 고도화 위주에서 기술력, 인재력, 정보력 등 중소기업의 지적 경영자원을 충실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만 중소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제1절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내용과 지원방법

1.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내용

4-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2012.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대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에서 공제한다.⁹⁾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3%를 공제한다.

4-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중소기업의 임시투자,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안전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 등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써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과세 이연한다.

9)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http://blog.daum.net/jy9713/16153223>

4-3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창업한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발생한 소득의 50%를 감면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여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중 핵심적인 제도이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감면 중 최초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창업당시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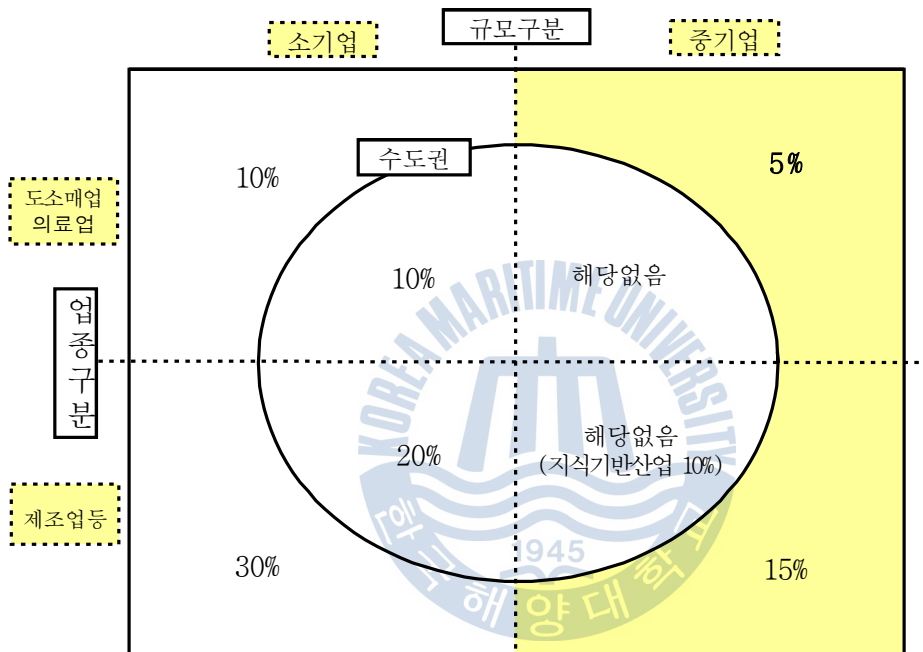


10) 비영리법인의 세무와 회계실무, http://cafe.naver.com/neog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19&

4-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조에 열거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의 일
정비율로 2014년까지 연장 적용하여 감면한다.

<그림 2-1> 지역별·업종별 감면율



소기업의 범위 :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제조업) 100명 미만,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명
미만, (기타 사업) 10명 미만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

4-5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지급기한이 60일 이내인 환어음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지급기한 30일내: 0.5%(대기업0.4%), 지급기한 30일~60일: 0.15%)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2013년까지 일몰 연장한다.

4-6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 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7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상생협력 중소기업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적용시기: 2011년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를 면제하며 2013년까지 일몰 연장한다.

4-8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소비성서비스업 영위업자 제외)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및 원천기술획득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의 20%(중소기업의 경우 30%)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의 경우 4년간 연평균 개발비 초과분의 40%(중소기업의 50%) 또는 3%+(해당과세년도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의 비율×1/2) 중 선택한다.

- ▶ 중소기업 이외의 내국인이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가 연평균발생액 초과분의 50%
- ▶ 중소기업 이외의 내국인이 대학 또는 중소기업 이외에 위탁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가 연평균발생액 초과분의 40%

4-9 특허권 등 취득가액의 7%세액공제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설정 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4-10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을 공제하고 타인이 보유한 설비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¹¹⁾

4-1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07.12.31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2009.12.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1) G4B기업지원플러스, <http://blog.naver.com/g4bnipa?Redirect=Log&logNo=10091834867>

4-1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산식((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13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가인원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①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는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②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2) 강성일세무사의세상통신, <http://blog.naver.com/kangtax?Redirect=Log&logNo=140104477359>

4-14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 또는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재산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종전 양도차익까지 합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3)

4-15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향후 체결될 FTA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할 무역피해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유도 지원의 목적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전환을 하는 분부터 FTA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전환 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전환 후 사업을 위한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 취득할 때 구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 한다.

4-1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은 50%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단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각각 5년과 2년간 감면)

13) 파워택스, http://cafe.naver.com/power-tax.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04&

4-17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 양도를 할때 양도세를 5년 거치 5년 분할과세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과세 이연 해준다.

4-18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지분을 50% 이하의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20%, 지분을 50% 초과한 중소기업은 15% 대기업은 30%)을 가산하여 할증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특례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4-19 90년 이후 신설사업장 대체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허용

종전에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기존 투자분(대체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증설투자는 조세감면 배제)하고 199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모든 투자(대체투자 및 증설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이후 설치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과밀억제를 유도하는 증설투자는 계속 적용을 배제하되, 기존시설을 단순히 대체하는 투자 즉 근로복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은 수도권과밀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이므로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1990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대체투자분에 대하여도 조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장 설치사업자라 하더라도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 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세액공제로 부수토지매입금액을 제외한 취득금액의 7%를 공제받는다.

14) 15)

4-20 최저한세 적용우대(적용률 7%, 일반법인은 10%,11%,14%)

최저한세제도란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 받음으로 인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취지는 여러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일괄하여 과도한 조세감면을 배제함으로써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3~5% 우대한다.

4-21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모든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 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차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방법 이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에 대하여 결손금

14) 백제의 꿈,<http://blog.naver.com/nmcho71?Redirect=Log&logNo=20009102054>

15) 매일경제 세무가이드,http://tax.mk.co.kr/shop/shopsemu_view.asp?VBID=216&id=02&BoardKind=&GotoPage=55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한다. 당해 중소 내국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계산(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2항)은 ①-②의 금액으로 한다.

①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②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금액 - 소급공제 결손금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 즉,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이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4-22 창업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 확대

창업중소기업이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 받는 세액을 추징한다.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방법

<표 3-1>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방법에 따른 비교

구분	직접지원방법			간접지원방법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특별상각
의의	일정기간 동안 특정의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적으로 감면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투자금액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비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미리 비용계상	일반감가상각비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정
성격	조세를 이용한 국고보조	좌동	좌동	과세이연에 의한 재정자금 무이자 융자	좌동
장점	효과가 직접적이고 동시에 즉시적임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원가능	투자규모에 비례한 지원가능	투자자금의 자체조달을 지원	기업의 자기금융기능 강화
한계	수익률이 낮은 기업에는 지원혜택이 없으며 소득의 구분 계산이 복잡		설비투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혜택이 없음	일시에 환입하도록 하는 경우 조세부담가중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1994

조세특례의 종류는 비과세,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같이 실제로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직접특례방식과 준비금, 분할익금, 충당금, 과세이연, 이월과세와 같이 화폐의 미래가치에 상당하는 혜택을 주는 간접특례방식으로 나뉜다.

동일한 금액의 감면이라면 간접특례보다는 직접특례방식이 유리하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방법을 비교해보면 <표2-12>로 정리된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원제도는 특정의 경제활동이나 특정산업에 부여되는 선별적인 감세조치이며 조세지원을 받음으로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는 금융지원과 달리 개별기업의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진다. 즉, 기업의 소득금액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소득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¹⁶⁾



16) 김주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한국상업교육학회, 2004), p.6.

제2절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1. 기업규모와 조세부담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업규모의 대·소와 조세부담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학자들의 연구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반된 관점 때문이다.

첫째, 정치적 비용이론(political cost theory)으로 기업의 규모가 크고 성공적인 기업일수록 높은 가시성(visibility)으로 인하여 더 많은 규제조치와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을 요구 받는 희생양이 되므로(R. Watts & J. L. Zimmerman, 1986), 정치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정치적 비용(total political costs)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세이므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조세부담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Zimmerman(1983)이 기업규모와 조세의 관계를 1947년부터 1981년까지 35년간의 기간에 걸쳐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상위 5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다른 기업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둘째로, 정치력이론(political power or clout theory)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와 반대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자사(自社)에 유리하게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더 낮은 조세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큰 기업일수록 세무계획을 통한 최적절세를 위한 조직화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많기 때문이다. Porcano(1986)는 Zimmerman과는 달리 오히려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세 부담 경향으로 나타내 미국 조세체계는 역진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Wilkie & Limberg(1990)는 Zimmerman과 Porcano의 상반된 연구 결과는 연구의 방법과 실증절차, 즉 유효세율에 대한 정의, 표본선택, 규모변수의 측정치 및 자료수집방법의 차이에서 온 것일 뿐 기업규모와 조세부담의 차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Wang(1991)은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과의 관련성 중 상당 부분이 외생변수인 영업손실에 기인됨으로 유효세율이 기업규모와 관계가 있는 것은 영업손실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며, 영업손실은 기업고유의 영업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기업규모를 직접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결과의 편의(bias)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Kern과 Morris(1992) 역시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세법에서 정한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실제 조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조세부담의 감소라는 의도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업은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므로 기업가치(현금흐름)를 증대할 것이므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는 세 부담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서로 다른 조세혜택의 차이에서 기업간, 산업간 유효세율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조세혜택가설)하에 이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이준규(1992)는 중소기업과 타 기업집단의 유효세율을 비교(T검증, 분산분석)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조세혜택규정이 유효법인세율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규복(1994)은 유효세율과 자본대비조세절약액(TSE)에 의하여 분석한 바, 중소기업, 증자법인, 상장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유효성이 실증되었으나, 제조업,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고 했다.

정문현·노현섭(1994)은 기업규모별로 총 감면비율, 직접감면비율 및 간접감면비율을 비교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더 높은 감면비율을 나타낸다고

했다.

권순철(1996)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간 조세부담률을 비교(T검증)한 결과, 연도(90~93)별로 각각 다른 결과가 나타나 특정연도 외에는 유의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개별적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는 유효성이 없다고 했다.

나상광(1998)은 각종 조세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은 그러지 못하는 중소비제조업에 비해 조세부담(유효세율) 및 조세절감 비율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이들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임시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유효세율의 차이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권순철(1996)과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

고성삼(1998)은 조세지원의 문제점으로 지원내용이 매우 다양하게 되어 매우 복잡하다는 것과 다양한 제도와 달리 실제 그 실효성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지원제도의 대폭확대와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자 및 실무자들에게 조세지원제도의 홍보와 교육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표석준(2004)은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등과 같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조세지원 방법을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세율의 인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은하·이만수(2005)는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입수하여 개별세액공제항목들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신고하는 과세표준신고서에서도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조세 부담률보다 작게 나타나 세액공제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액공제 개별항목별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인력개발설비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는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

에 혜택이 있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적은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거나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규안·오웅락(2003)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를 일반 기업과 비교하여 유효세율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투자촉진효과에 관한 연구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하여 1) 투자는 그 기업의 재무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재무구조이론 2) 투자는 투자비용 즉 “자본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고전학파의 학설 3) 투자는 신규투자 자본재의 시장가치에 따라 결정된다(Tobin의 q 이론)는 등 상반된 이론이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조세지원제도의 투자효과에 관한 신고전학파(Neoclassical)모형은 조세지원제도가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변화시켜 기업의 투자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신규투자의 한계생산성(MPK)이 동 자본에 대한 사용자비용(U)과 동일한 수준($MPK=U$)까지 신규자본재 구입을 계속할 것이다. 이때 자본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법인세 등을 낮추어 줌으로써 자본재 구입비용을 감소시켜 자본의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새로운 균형 자본량까지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한다. 투자유인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는 사용자자본비용에 변화를 주고, 사용자자본비용의 변화를 통하여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조세지원제도의 투자유인효과에 관하여, 이종곤(1991)은 세법상 투자유인제도를 변수로 하고 토빈 q 투자이론을 이용한 법인세 공제후 q 모형을 사용하여 투자유인세제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인세 공제후 q 값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유인세제의 유효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반면, 전춘옥·조현연·박성규·김용승(1996)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들이 설비투

자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가를 실증 조사한 바, 기업의 투자는 자본의 상대적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 기업이 처한 경기 순응적 변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 기업의 투자는 기업가의 성장욕구(산출량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본의 상대적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조세지원제도 자체의 투자촉진효과는 없다고 했다.

송기국(1998)은 1953년부터 1992년까지 40년간 우리나라에서의 투자유인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자유인 조세지원제도(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용자 자본비용에 영향을 주지만, 투자행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의 기업 환경 하에서는 사용자 자본비용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투자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라 했다.

전규안(2001)은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 몇 가지 항목에 집중되었다. 조세지원제도 수의 축소와 감면 폭의 확대를 통해 조세지원체계를 단순화하고 조세지원제도 이용을 간편하게 하며 조세지원제도를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적하고 있다.

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효과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재무구조이론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조세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최대화 하려는 동기는 부채를 감세수단으로 활용하여 부채를 증가하게 한다.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채발행비용이 이를 통한 세금절감효과(tax shield effect)를 능가하거나, 비부채감세수단(non-debt tax shield : 감가상각, 세액감면, 세액공제, 준비금 등)이 많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채발행 유인이 적게 되고(대체효과가설) 기존의 부채도 상환하게 된다. 결국 세금

이 기업의 부채비율, 나아가서 자본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조세지원의 효과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신승묘(1998)의 연구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이 낮을수록 부채감세수단과 비부채 감세수단 사이에는 대체효과가 크므로 따라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비부채감세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비상장 중소기업업을 상대로 분석한 이계원(1998)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비부채감세수단과 부채비율은 유의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바, 현행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가 재무구조개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윤종욱(2001)의 연구에서는 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는데 이는 조세감면 등으로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기업은 감세효과가 적은 부채감세수단보다 비부채감세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채사용 동기가 줄어들어 부채비율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기업가치 평가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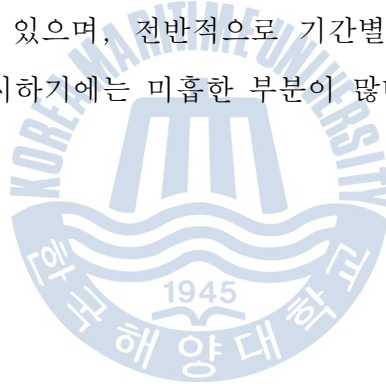
한영희(1998)는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정에 의한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의 유무가 유용한 정보효과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연도 말 주식의 시가총액)를 종속변수로 하고 직접감면, 간접감면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¹⁾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변수간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즉, 조세감면이 주가가액으로 평가한 기업가치에 관계를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함을 보여 주었고, 또한 감면의 효과는 산업별, 연도별 기업가치에 각각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만우·노상환(2002)은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생산성, 부가가치 증가

1) 직접감면, 간접감면 외 당기순이익, 법인세, 위험요인, 성장요인 등 6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다.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생산액), 경쟁력(1인당 부가가치) 향상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회귀분석한 결과 조세지원 1% 증가는 생산액 1.008%의 증가, 1인당 부가가치 0.909%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각각 1.202%, 0.952%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매우 크고 탄력적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조세지원제도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 활용도 및 복잡성에 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분석하였지만,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기간별 흐름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부분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대부분 분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간별 흐름을 간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된다.



제3절 선행운용실태연구의 기간별 흐름에 관한 분석

1. 선행연구표본의 구성

<표 3-2> 표본의 구성

(단위: 업체)

구분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표본	466	600	1,113	403	450	472
개인	88	128	259	42	83	75
법인	378	472	854	361	367	397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들의 구성을 연도별로 보면 <표 3-2>로 정리된다.

2.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활용현황

<표 3-3> 중소기업 기장실태

(단위: %)

구분	1999	2001	2003	2005	2007
직접기장	59.1	47	53.6	45.8	62.7
위탁기장	39.7	52.0	30.3	34.0	22.9
기장안함	0.5	0.4	문항없음	문항없음	문항없음
기타(병행)	0.7	0.6	16.1	20.2	14.4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먼저 중소기업의 기장실태를 살펴보면 <표 3-3>로 정리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기장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기장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회계장부 기장방법을 세분화하여 검토하면 직접기장은 증가하지만, 위탁기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소기업의 인력이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체 기장능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3-4>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의 애로사항

(단위: %)

구 분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	31.7	46.6	36.3	39.7	38.8	35.5
세무조정 사항 및 제출서류복잡	10.7	24.6	25.4	18.9	18.7	29.2
세무신고 등 납세협력 비용 과다	10.3	8.7	20.9	15.8	20.2	17.0
세무회계에 관한 전문인력부족	23.9	17.8	16.4	24.4	20.5	15.5
세무서식 및 제출양식의 빈번한 개정	12.0	문항 없음	문항 없음	문항 없음	문항 없음	문항 없음
과세소득, 납부세액의 과대계상부담	11.4	문항 없음	문항 없음	문항 없음	문항 없음	문항 없음
기타	2.8	2.3	1.0	1.2	1.8	2.8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의 애로사항을 연차별로 보면 <표 3-4>로 정리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조직체계가 취약하여 별도의 세무·회계 전담부서를 갖추기가 쉽지 않고 유능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무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회계 및 세무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공인회계사에게 위탁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세법의 빈번한 개정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세법 규정 및 제출 서류의 복잡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에서 이해하기 쉬운 체계적인 세법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5> 조세관련 정보취득방법

(단위: %)

구 분	2001	2003	2005	2007
세무대리인	42.9	46.6	53.2	35.0
신문,방송 및 인터넷	22.3	11.1	15.9	20.9
조세관련 전문지 (도서·잡지)	22.2	22.4	19.1	27.5
세무서 등 관공서	8.4	17.9	10.4	15.3
조합 등 경제단체	2.8	1.8	0.8	문항없음
기타	1.4	0.2	0.6	1.3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1,2003,2005,2007)

조세관련 정보취득방법을 연차별로 보면 <표 3-5>로 정리된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조세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7년 이후 미디어의 급격한 성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신문, 방송 및 인터넷 및 조세관련 전문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세무서 등 관공서 및 기타에 의존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유지해오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 상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적으로 상담 받는 절차가 어렵다고 느끼고 상담실이나 민원실을 찾기보다는 업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편하고 손쉽게 해결하고 있다고 보인다.

<표 3-6> 세정혁신 우선 추진과제

(단위: %)

구 분	2003	2005	2007
다양하고 차별화된 납세서비스 제공	11.7	12.9	9.6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적극 해소	문항 없음	7.3	10.6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24.5	34.1	30.8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풍토 조성	4.5	6.2	7.7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세무조사 혁신	7.9	6.2	2.3
소득과약 재고를 위한 과세기반확충	9.9	3.0	3.4
글로벌 기준에 따른 공정한 세정운영	9.1	4.0	3.7
국세공무원의 의식과 자세 혁신	5.0	1.5	7.4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지원	문항 없음	23.3	12.5
성실납세자 우대방안 확충 및 세무대리인 역할 재정립	27.4	0.4	12.0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3, 2005, 2007)

세정혁신 우선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표 3-6>로 정리된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이 연도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적극 해소 항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납세자 중심의 세정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세무행정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추어 조세징수가 중심이 아닌 동반자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표 3-7> 성공적 세정혁신을 위한 추진방법

(단위: %)

구 분	2003	2005	2007
체계적인 개혁과제의 설계와 지속적인 개혁 추진	23.7	38.5	64.2
세무공무원(조직)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강화	15.1	12.7	20.6
조세법 단순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43.9	41.5	문항 없음
납세자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강화	16.6	6.9	13.1
기타	0.7	0.5	2.1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3,2005,2007)

따라서 앞으로 세무행정을 성공적으로 혁신시키기 위한 추진방법은 <표 3-7>에서 체계적인 개혁과제의 설계와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원하고 있는 추세이며 납세자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강화 및 세무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의 강화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일관성 있는 정책의 세법개정과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며, 서비스중심적인 세무공무원 육성을 강화하고, 국가적 홍보책자 발행이나 세미나 개최를 통한 세정홍보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8> 세무행정상 개선사항

(단위: %)

구 분	2001	2003	2005	2007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세액 증액 요구	26.2	23.1	28.6	22.1
세금의 과다 부과	34.5	33.0		
불필요한 신고서식 과다	28.3	32.5	22.5	25.1
세무공무원의 부조리	1.3	3.2	문항 없음	문항 없음
세무공무원의 대민봉사 정신 결여	6.0	4.7	4.2	8.7
세무지식 미숙으로 인한 신고누락 가산세	문항 없음	문항 없음	34.6	31.8
무리한 세무조사	문항 없음	문항 없음	2.5	3.0
기타	3.7	3.5	7.6	9.3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1, 2003, 2005, 2007)

중소기업은 그동안 정부의 세무행정의 추진 과제와 방법을 제시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표 3-8>에서 ‘세무지식 미숙으로 인한 신고누락 가산세’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세액 증액 요구’, ‘세금의 과다 부과’, 그리고 ‘불필요한 신고서식 과다’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3-6>와 <표 3-7>과 같이 서비스중심의 세무행정에 대한 조세정책의 일관성 있는 세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세무공무원에 대한 서비스중심의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알기 쉬운 세법에 대한 교육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3-9> 세무조사의 바람직한 방향

(단위: %)

구 분	2001	2003	2005	2007
명백한 탈세 등 혐의 이외의 세무조사 배제	60.9	60.9	13.4	23.7
세무조사대상 축소, 조사강도 강화	7.3	7.3	11.3	11.7
세무조사대상 · 조사강도 대폭 강화	9.0	9.0	문항 없음	문항 없음
정기조사 위주운용, 수시조사 엄격제한	10.9	10.9	20.6	11.9
현행유지	11.8	11.8	0.2	2.1
납세자 권익보호	문항 없음	문항 없음	47.5	46.4
다른 경제 목표를 위한 특별조사 배제	문항 없음	문항 없음	6.9	4.2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1, 2003, 2005, 2007)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표 3-9>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하여 주고, 기간별로 보았을 때 ‘명백한 탈세 등 혐의 이외의 세무조사를 배제하여 줄 것’ 을 대부분 요청하였다. 또한 다른 항목으로 ‘정기조사 위주운용, 수시조사 엄격제한’ 를 제시하였다. '세정 선진화'와 '기업부담 축소' 측면에서 세무조사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실제 국세청 전체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2009년 3천247건에서 2010년 3천176건으로 71건 줄었지만 여전히 세무조사가 상대적으로 조사하기 쉬운 중소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산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연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고한 중소 사업자는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표 3-10> 경영안정·기술인력개발·창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단위: %)

구 분	1999	2001	2003	2005	2007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7.8	54.4	56.1	57.8	35.8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8.2	10.9	4.7	14.4	3.2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5.2	12.2	4.5	문항 없음	문항 없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감면	5.7	11.6	18.1	16.7	36.2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2	1.1	1.0	2.7	2.1
법인세 분납기간의 중소기업 연장	24.3	28.8	문항 없음	35.3	35.8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8.0	11.2	문항 없음	11.8	15.3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조세특례	2.3	5.3	문항 없음	문항 없음	문항 없음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9, 2001, 2003, 2005, 2007)

경영안정, 기술인력 개발 및 창업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표 3-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법인세 분납기간의 중소기업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감면’ 그리고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대한 조세특례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세특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세액 감면이나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감면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여야 가능하나 해당업종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어 그 비중은 연도별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와 열악한 환경 개선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요구도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1>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단위: %)

구 분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21.2	13.5	24.1	40.4	30.4	22.0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9.9	4.3	10.0	12.7	17.6	9.3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3.9	3.2	4.7	2.2	9.3	3.2
임시투자세액공제	문항 없음	28.5	23.7	33.5	40.7	30.3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문항 없음	2.0	5.4	문항 없음	문항 없음	문항 없음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표 3-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조세특례로 나타났다. 세제지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써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등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고 임시 조치가 아니라 28년째 이어온 상시 조치가 됨으로써 당초의 정책 기대효과는 상실되었으며 R&D투자, 환경개선 투자, 생산성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지원제도 과잉의 소지가 있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시에는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등 타격이 심각할 우려가 있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만 적용되는 지방우대 세제로 폐지할 경우 지방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제도유지의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며 폐지논란의 중심에 있다. 현재, 당초 2010년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존에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하여 고용증가와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투자금액의 5%, 6%를 공제하는 점은 현재와 동일하나 고용유인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동일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4~5%)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 중복 적용한다.²⁾

<표 3-1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

(단위: %)

구 분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6.5	14.0	11.3	12.7	19.0	20.1
비교적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20.6	26.3	28.8	38.5	35.3	43.6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이 부진한 편임	39.8	34.9	27.3	30.8	28.1	19.7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33.1	12.3	11.8	6.7	8.0	6.8
활용여부를 모르겠음 (세무대리인 위탁 등)	문항 없음	12.5	20.8	11.3	9.6	9.7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표 3-12>에 제시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어있으며, 기간별 흐름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정부부처 기관 등에서 중소기업 조세

2) 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p1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이해하고 합리적 절세기법의 실무적 활용방안의 모색을 하며,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주어진 조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의 실질적 도움을 받으려는 변화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13>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정도

(단위: %)

구 분	1999	2001	2003	2005	2007
많은 도움이 되었음	21.5	18.1	31.5	51.1	33.9
다소 도움이 되었음	50.5	49.1	64.1	42.2	56.9
별로 도움이 안됨	24.4	25.3	4.4	4.4	8.1
전혀 도움이 안됨	3.6	7.4	0.0	2.2	1.1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9,2001,2003,2005,2007)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표 3-13>에서 대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났으며, 따라서 중소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인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유도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간별 흐름에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여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 이유

(단위: %)

구분	1999	2001	2003	2005	2007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8.2	33.6	51.0	35.1	42.7
지원제도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함	24.8	43.8	25.2	40.0	39.2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만 감면받음	16.4	11.5	13.2	9.2	7.6
중복적용이 배제되어 한가지 밖에 감면받지 못함	10.7	4.6	4.6	9.2	5.3
감면혜택 거의 없음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 발생)	6.7	6.3	5.3	4.3	4.1
기타	3.2	0.2	0.7	2.2	1.2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9, 2001, 2003, 2005, 2007)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표 3-14>에 제시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과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함’ 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부담 완화 조치가 적용대상이 좁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또한, 매년 활용부진의 이유가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보아 제도 개선의 미흡함과 제도 개선책 마련에 정부의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5>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단위: %)

구 분	2001	2003	2005	2007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허용	15.9	15.9	28.8	24.0
각종 투자지원세제의 감면을 확대	52.4	21.3	21.4	21.0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상시화	21.4	8.2	8.6	9.6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	7.7	7.9	5.6	4.7
기타	2.6	0.5	1.2	1.1
법인(소득)세 인하	문항없음	46.2	34.4	39.7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1, 2003, 2005, 2007)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방안은 <표 3-15>에서 ‘법인(소득)세 인하’ 방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허용’, ‘각종 투자지원세제의 감면을 확대’,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상시화’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 25%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빼고 보면 지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만큼 우리가 앞장서 법인세율을 크게 낮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매년 법인(소득)세 인하가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조세지원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고려해볼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6>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단위: %)

구 분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48.7	26.9	29.6	31.9	40.9	33.7
감면요건의 완화	35.8	18.8	15.5	14.2	14.3	18.8
신청서류 또는 절차의 간소화	24.5	9.9	12.9	7.8	7.4	문항 없음
감면에 따른 세무간섭 배제	23.8	문항 없음	문항 없음	문항 없음	문항 없음	문항 없음
지원제도 홍보 또는 교육 강화	21.5	10.2	17.7	8.8	9.4	13.6
감면을 또는 감면기간 확대	18.9	12.0	13.0	11.8	7.1	9.6
최저한세제도의 개선	11.6	11.0	10.9	15.8	10.2	11.6
중복적용 배제제도 개선	문항 없음	7.3	문항 없음	9.5	10.4	13.9
표준소득을 배제제도 개선	문항 없음	3.4	문항 없음	문항 없음	문항 없음	문항 없음
기타	문항 없음	0.5	문항 없음	0.2	0.2	0.9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지금까지 분석한 <표 3-4>, <표 3-8>, <표 3-12>, <표 3-14> 및 <표 3-15>의 결과에 의하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을 조사하면 <표 3-16>으로 요약된다. <표 3-16>에 따르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를 제고하고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 되어야 하며, ‘지원제도 홍보 또는 교육 강화’, ‘감면요건의 완화’, ‘최저한세제도의 개선’, ‘중복적용 배제제도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감면요건의 완화를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제도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고 홍보 또는 교육강화를 통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지원제도의 실질적 적용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4장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제1절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운용실태

1. 설문표본의 구성

본 연구에서 자료는 설문조사에 의하여 수집하였고 연구대상은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임직원이다. 다음의 표는 설문조사의 항목과 조사개요이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총 100매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유효설문지는 67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설문지를 대상으로 본 2011년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태분석을 수행하였다.

1-1 응답자 연령분포

<표 4-1> 응답자 연령분포

구분	빈도	비율(%)
25세 이하	3	4.5
26~35세	30	44.8
36~45세	33	49.2
55세 이상	1	1.5
합계	67	100.0

응답자 연령분포는 25세 이하가 3명으로 4.5%, 26~35세가 30명으로 44.8%, 36~45세가 33명으로 49.2%, 55세 이상이 1명으로 1.5%를 보이고 있다.

1-2 응답자 학력분포

<표 4-2> 응답자 학력분포

구 분	빈 도	비 율(%)
전문학사 이하	4	6.0
학사	55	82.0
석사	7	10.5
박사	1	1.5
합 계	67	100.0

응답자 학력분포는 전문학사 이하가 6.0%, 학사가 82.0%, 석사가 10.5%, 박사가 1.5%로 나타났다.

1-3 응답자 직위분포

<표 4-3> 응답자 직위분포

구 분	빈 도	비 율(%)
사원	24	35.8
주임 · 계장급	22	32.8
대리 · 과장급	16	23.9
차장 · 부장급	4	6.0
임원 이상	1	1.5
합 계	67	100.0

응답자 직위분포는 사원이 35.8%, 주임 · 계장급이 32.8%, 대리 · 과장급이 23.9%, 차장 · 부장급이 6.0%, 임원 이상 1.5%로 나타났다.

1-4 응답자 담당업무분포

<표 4-4> 응답자 담당업무분포

구분	빈도	비율(%)
관리	10	14.9
경영지원	35	52.2
재무	17	25.4
기타	5	7.5
합계	67	100.0

응답자 담당업무분포는 관리가 14.9%, 경영지원이 52.2%, 재무가 25.4%, 기타가 7.5%로 나타났다.

1-5 응답자 근무경력분포

<표 4-5> 응답자 근무경력분포

구분	빈도	비율(%)
5년 이하	24	35.8
5~10년	22	32.8
10~15년	16	23.9
20년 이상	5	7.5
합계	67	100.0

응답자 근무경력분포는 5년 이하가 24명으로 35.8%, 5~10년이 22명으로 32.8%, 10~15년이 16명으로 23.9%, 20년 이상이 5명으로 7.5%를 보이고 있다.

1-6 응답자의 업체 종사자 수 분포

<표 4-6> 응답자의 업체 종사자 수 분포

구분	빈도	비율(%)
20명 미만	5	7.5
20명~49명	7	10.4
50명~99명	17	25.4
100명~299명	35	52.2
300명 이상	3	4.5
합계	67	100.0

응답업체 종사자 수 분포는 20명 미만이 7.5%, 20명~49명이 10.4%, 50명~99명이 25.4%, 100명~299명이 52.2%, 300명 이상이 4.5%로 나타났다.



2. 중소기업의 기장실태 및 세무신고 현황

2-1 중소기업 기장실태

<표 4-7> 중소기업 기장실태

구분	빈도	유효 비율
직접기장	42	62.7
위탁기장	15	22.4
기타(병행)	10	14.9
합계	67	100.0

중소기업의 기장실태는 직접기장(62.7%)로 가장 높았으며 위탁기장(22.4%), 기타(병행)(14.9%) 순으로 조사되었다.

2-2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의 애로사항

<표 4-8>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의 애로사항

구분	빈도	유효 비율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	29	43.2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복잡	21	31.3
세무신고 등 납세협력비용 과다	14	21.0
세무회계에 관한 전문 인력부족	2	3.0
기타	1	1.5
합계	67	100.0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의 애로사항은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43.2%)로 가장 높았으며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복잡(31.3%), 세무신고 등 납세협력비용 과다(21%), 세무회계에 관한 전문 인력부족(3%), 기타(1.5%)로 조사되었다.

2-3 조세관련 정보취득방법

<표 4-9> 조세관련 정보취득방법

구분	빈도	유효 비율
세무대리인	22	32.8
신문,방송 및 인터넷	20	29.8
조세관련 전문지(도서·잡지)	15	22.4
세무서 등 관공서	8	12.0
기타	2	3.0
합계	67	100.0

조세관련 정보취득방법은 세무대리인(32.8%)로 가장 높았으며 신문, 방송 및 인터넷(29.8%), 조세관련 전문지(도서·잡지)(22.4%), 세무서 등 관공서(12%), 기타(3%)로 조사되었다.

3. 중소기업의 세무행정 추진과제 및 방법과 세무조사 등 현황

3-1 세정혁신 우선 추진과제

<표 4-10> 세정혁신 우선 추진과제

구분	빈도	유효 비율
다양하고 차별화된 납세서비스 제공	8	11.9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적극 해소	25	37.3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22	32.8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지원	5	7.5
성실납세자 우대방안 확충 및 세무대리인 역할 재정립	7	10.5
합계	67	100.0

세정혁신 우선 추진과제는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적극 해소(37.3%)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32.8%), 다양하고 차별화된 납세서비스 제공(11.9%), 성실납세자 우대방안 확충 및 세무대리인 역할 재정립(10.5%),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지원(7.5%)로 조사되었다.

3-2 성공적 세정혁신을 위한 추진방법

<표 4-11> 성공적 세정혁신을 위한 추진방법

구분	빈도	유효 비율
체계적인 개혁과제의 설계와 지속적인 개혁추진	38	56.7
세무공무원(조직)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강화	12	17.9
납세자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강화	13	19.4
기타	4	6.0
합계	67	100.0

성공적 세정혁신을 위한 추진방법에는 체계적인 개혁과제의 설계와 지속적인 개혁추진(56.7%)로 가장 높았으며 납세자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강화(19.4%), 세무공무원(조직)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강화(17.9%), 기타(6%)로 조사되었다.

3-3 세무행정상 개선사항

<표 4-12> 세무행정상 개선사항

구분	빈도	유효 비율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세액 증액 요구 및 세금 과다부과	10	14.9
불필요한 신고서식 과다	17	25.3
세무공무원의 대민봉사 정신 결여	18	26.9
세무지식 미숙으로 인한 신고누락 가산세	18	26.9
기타	4	6.0
합계	67	100.0

세무행정상 개선사항에는 세무공무원의 대민봉사 정신 결여(26.9%)와 세무지식 미숙으로 인한 신고누락 가산세(26.9%)로 가장 높았으며, 불필요한 신고서식 과다(25.3%),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세액 증액 요구 및 세금 과다부과(14.9%), 기타(6%)로 조사되었다.

3-4 세무조사의 바람직한 방향

<표 4-13> 세무조사의 바람직한 방향

구분	빈도	유효 비율
명백한 탈세 등 혐의 이외의 세무조사 배제	10	14.7
세무조사대상 축소, 조사강도 강화	8	11.9
정기조사 위주운용, 수시조사 엄격제한	17	25.7
현행유지	0	0
납세자 권익보호	32	47.7
합계	67	100.0

세무조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납세자 권익보호(47.7%)로 가장 높았으며 정기조사 위주운용, 수시조사 엄격제한(25.7%), 명백한 탈세 등 혐의 이외의 세무조사 배제(14.7%), 세무조사대상 축소, 조사강도 강화(11.9%)로 조사되었다.

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현황

4-1 경영안정·기술인력개발·창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표 4-14> 경영안정·기술인력개발·창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구분	빈도	유효 비율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22	32.8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감면	16	23.9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	3.0
법인세 분납기간의 중소기업 연장	16	23.9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1	16.4
합계	67	100.0

경영안정·기술인력개발·창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은 중소기업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32.8%)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감면(23.9%), 법인세 분납기간의 중소기업 연장(23.9%),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16.4%),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3%)로 조사되었다.

4-2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표 4-15>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구분	빈도	유효 비율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22	32.8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8	12.0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6	9.0
임시투자세액공제	31	46.2
합계	67	100.0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46.2%)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32.8%),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12%),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9%)로 조사되었다.

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 및 평가

5-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

<표 4-16>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

구분	빈도	유효 비율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11	16.4
비교적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40	59.7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이 부진한 편임	14	20.9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1	1.5
활용여부를 모르겠음(세무대리인 위탁 등)	1	1.5
합계	67	100.0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는 비교적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59.7%)로 가장 높았으며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이 부진한 편임(20.9%),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16.4%),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1.5%), 활용여부를 모르겠음(세무대리인 위탁 등)(1.5%)로 조사되었다.

5-2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정도

<표 4-17>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정도

구분	빈도	유효 비율
많은 도움이 되었음	21	31.3
다소 도움이 되었음	39	58.2
별로 도움이 안됨	5	7.5
전혀 도움이 안됨	2	3.0
합계	67	100.0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다소 도움이 되었음(58.2%)로 가장 높았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음(31.3%), 별로 도움이 안됨(7.5%), 전혀 도움이 안됨(3%)로 조사되었다.

5-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 이유

<표 4-18>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 이유

구분	빈도	유효 비율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9	43.3
지원제도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함	26	38.8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만 감면받음	9	13.4
중복적용이 배제되어 한가지 밖에 감면받지 못함	2	8.0
감면혜택 거의 없음(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 발생)	1	1.5
합계	67	100.0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 이유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43.3%)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제도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함(38.8%),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만 감면받음(13.4%), 중복적용이 배제되어 한가지 밖에 감

면받지 못함(8%), 감면혜택 거의 없음(소득금액이 적거나 결혼 발생)(1.5%)로 조사되었다.

6.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세제지원방안 및 개선사항

6-1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표 4-19>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구분	빈도	유효 비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허용	15	22.4
각종 투자지원세제의 감면을 확대	15	22.4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상시화	10	14.9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	4	6.0
법인(소득)세 인하	23	34.3
합계	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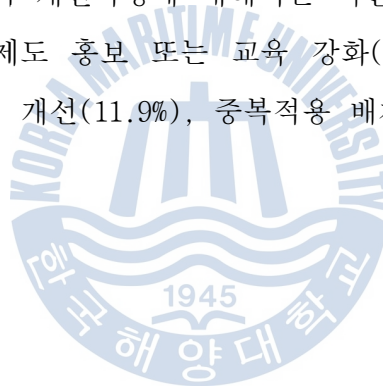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인하(34.3%)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허용(22.4%), 각종 투자지원세제의 감면을 확대(22.4%),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상시화(14.9%),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6%)로 조사되었다.

6-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표 4-20>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구분	빈도	유효 비율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26	38.8
감면요건의 완화	12	17.9
지원제도 홍보 또는 교육 강화	15	22.4
최저한세제도의 개선	8	11.9
중복적용 배제제도 개선	6	9.0
합계	67	100.0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38.8%)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제도 홍보 또는 교육 강화(22.4%), 감면요건의 완화(17.9%), 최저한세제도의 개선(11.9%), 중복적용 배제제도 개선(9%)로 조사되었다.



제2절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조세지원제도의 정비

회계 및 기장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지원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원제도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업종을 확대시키고 조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 세수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 제도 중에 보기에는 그럴듯한 제도이나 실제 이용이 곤란한 제도가 많다. 이러한 제도는 정리하여 알기 쉽고, 실효성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조세제도를 중소기업에 홍보하고, 수요기업의 의견과 고충을 상시 수렴하는 쌍방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³⁾

<그림 4-1>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 응답자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요구

<활용부진이유 응답비율>		<응답자의 애로사항>		<응답자의 개선사항>	
항목	비율 (%)	항목	비율 (%)	항목	비율 (%)
지원대상에 해당되지않음	43.3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	49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49
지원제도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못함	38.8	세무조정 사항 및 제출서류복잡	34.5	감면요건의 완화	34.5
합계	82.1	세무신고 등 납세협력 비용과 다	14.5	지원제도 홍보 또는 교육강화	14.5
		세무회계에 관한 전문인력부족	2	최저한세제도의 개선	2
		합계	100	중복적용 배제 제도개선	2
				합계	100

3) 임성균,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 (기고, 2009)

<그림 4-1>과 같이 지원제도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하여 활용이 부진하다는 것과 조세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항목이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해당항목에 응답자 중 조세지원제도의 애로사항은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과 세무조정 사항 및 제출서류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응답자의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지원 대상범위의 확대 및 감면요건의 완화 같은 조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의 조세지원제도 이외에 특별히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설치되었으나, 직접세 감면실적의 2.5%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적인 면에서 절대다수인 중소기업 비중에 비해서 조세지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이 지나칠 정도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한편, 실효성은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지원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또한 조세지원의 종류가 다양하면 수혜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행정 측면에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활용도가 낮은 것부터 가능한 한 축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는 실용성을 바탕으로 단순화하여 제도의 이용자나 관리자가 이해하기 쉽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 또는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의 효과가 복잡한 메카니즘을 거쳐 나타나고 그 효과의 크기가 쉽게 측정되지 않으면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유인제도의 의도하는 반응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진다. 복잡한 제도는 이용하는 기업이나 관리하는 당국 모두에게 행정 및 관리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제도의 도입에 있어 행정의 효율화를 견지하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도의 이용도가 낮다는 그 자체로서 비효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매출, 수익의 규모가 영세하여 실효세 부담 규모가 작으며 회계처

리 능력과 세무정보에 어두워 복잡한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등 사용이 용이하고 효과가 큰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4~8년간의 사후 관리가 필요한 간접 감면보다는 직접 감면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야 하며, 대신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과 통상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세의 이연 효과만을 부여하는 간접감면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제고를 위한 제도는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R&D 투자와 생산성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⁴⁾

팔리지 않는 재고 걱정에 가동을 줄이는 제조업체들이 늘어나고,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신규 투자를 중단한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1416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평균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가동률(80% 이상)을 보이는 중소기업은 8월 기준 43.5%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46.3%)와 비교하면 2.8%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생산 활동이 활기를 잃다보니 신규 채용도 줄이고 있다.

홍성철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내수 부진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수출·내수 기업 모두 어려울 전망이다” 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대기업의 배려가 필요한 때” 라고 말했다.⁵⁾

<표 4-17>의 중소기업(제조업)의 기술개발투자액 비교표를 보면 2008~2009년 사이 기술개발투자를 한 업체의 수는 975업체가 줄었으며, 기술개발 투자총액은 및 평균 투자액은 늘었으나 매출액대비 투자액비율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4-18>의 중소기업(제조업)의 기간별 기계장치 투자액 추이를 보더라도 2003~2009년 사이 기계장치 투자액이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걸 알 수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투자가 위축되었거나 변동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정부의 중소기업의 투자세제지원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지도록 단순화 되어야 하며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4) 임성균,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 (기고, 2009)

5) 김유성, 「중소기업, 공장은 안돌고 돈줄은 막히고」, (이데일리, 2011.10.05)

<표 4-21> 중소기업(제조업)의 기술개발투자액 비교

종사자규모별	2008	2008	2008	2008	2008
	투자업체수 (개)	기술개발 투 자총액(천원)	기술개발투자 업체당 평균 투자액(천원)	투자업체매출 액 대비 투자 액비율(%)	중소제조업매 출액대비 투 자액비율(%)
계	32,663	5,768,955,361	176,623	2.53	1.26
5~9인	11,387	769,242,521	67,552	5.43	1.12
10~19인	8,723	908,441,855	104,146	3.79	1.18
20~49인	8,209	1,656,613,118	201,807	2.82	1.39
50~99인	2,661	971,281,747	364,987	2.07	1.25
100~199인	1,318	936,349,783	710,546	1.86	1.29
200~299인	365	527,026,336	1,445,690	1.56	1.24
소기업	28,319	3,334,297,494	117,740	3.44	1.26
중기업	4,343	2,434,657,867	560,532	1.86	1.27

종사자규모별	2009	2009	2009	2009	2009
	투자업체수 (개)	기술개발 투 자총액(천원)	기술개발투자 업체당 평균 투자액(천원)	투자업체매출 액 대비 투자 액비율(%)	중소제조업매 출액대비 투 자액비율(%)
계	31,688	5,946,006,595	187,642	2.50	1.24
5~9인	10,564	629,988,627	59,635	4.18	0.88
10~19인	9,126	983,436,318	107,762	3.76	1.23
20~49인	7,690	1,682,608,783	218,805	2.90	1.40
50~99인	2,668	1,184,728,158	444,051	2.24	1.41
100~199인	1,248	903,870,296	724,255	1.76	1.19
200~299인	392	561,374,413	1,432,078	1.61	1.18
소기업	27,380	3,296,033,728	120,381	3.32	1.21
중기업	4,308	2,649,972,867	615,128	1.91	1.28

종사자규모별	투자업체수 (개)	기술개발 투 자총액(천원)	기술개발투자 업체당 평균 투자액(천원)	투자업체매출 액 대비 투자 액비율(%)	중소제조업매 출액대비 투 자액비율(%)
차 이	-975	177,051,234	11,019	-0.03	-0.02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규제영향평가과

<표 4-22> 중소기업(제조업)의 기간별 기계장치 투자액

(단위: 백만원)

규모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3,026,046	3,227,007	3,179,356	3,183,359	3,221,064	3,854,565	3,676,962
5-9인이하	192,334	212,948	191,629	200,989	285,064	569,939	547,005
10-19인이하	436,741	420,209	379,521	400,419	361,316	505,769	565,866
20-49인이하	776,541	813,236	796,989	864,899	852,871	950,201	943,233
50-99인이하	632,684	659,718	662,819	565,242	602,756	676,234	641,044
100-199인이하	632,037	734,069	727,003	685,421	719,838	682,485	648,304
200-299인이하	355,707	386,827	421,395	466,389	399,219	469,937	331,510
소기업	1,405,617	1,446,393	1,368,140	1,466,307	1,499,250	2,025,910	2,056,104
중기업	1,620,429	1,780,614	1,811,216	1,717,052	1,721,814	1,828,655	1,620,858

자료: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규제영향평가과

기업의 투자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외국에서도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한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선진 외국과 같이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으로는 생산성향상설비, 에너지절약설비, 특정설비처럼 모든 사업자의 특정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과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있다.⁶⁾ 생산성향상설비의 대상으로는 제조업 공정개선·자동화시설, 제조업 첨단기술설비, ERP 설비, 전자상거래설비가 있으며, 시설고도화가 대상이며 반면에, 특정설비의 대상은 공해방지시설·유통산업합리화시설·산재예방시설·광산보안시설·비상대비시설·식품위해요소방지시설 등으로 환경이나 안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서정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 개편방향」, 중소기업연구원(2005),p46

<그림 4-2> 투자세제지원의 중복적용 및 감면을 확대 응답자의 활용정도와 제도활용

<중복적용 및 감면확대 응답비율>		<응답자의 활용정도>		<응답자의 투자촉진 세제지원>	
항목	비율 (%)	항목	비율 (%)	항목	비율 (%)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허용	22.4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2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33.3
각종 투자지원 세제의 감면을 확대	22.4	비교적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56.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16.7
합계	44.8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이 부진한 편임	20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6.7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3.3	임시투자세액공제	43.3
		합계	100	합계	100

<표 4-19>와 같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허용과 각종 투자지원세제의 감면을 확대에 관한 요구하는 응답자의 76.7%가 조세지원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로 임시투자세액공제 43.3%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3.3%라고 응답하고 있다.

조세지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제도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여 투자세제지원에 활용한다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광업 및 제조업을 비롯하여 다수 업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주는 제도로 그 목적은 경기조절에 있다. 그래서 경기를 조절하는데 특정 업종이나 중소기업의 투자, 특정자산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업종과 기업규모, 자산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향락 유흥산업 등 특정 업종만을 제외하는 방식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복지원배제규정은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감면제도를 적용받게 되

는 경우 유리한 감면제도를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여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위한 제도이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투자·R&D·사업·지방이전·구조조정 등 성장단계별로 34개의 우대지원 제도를 운용 중으로 현재도 충분히 지원중이며 향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R&D의 경우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향상 등을 위한 과학기술개발 등 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서비스 R&D”로 규정하여 R&D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들이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는 R&D 분야를 의료·보건·교육·문화 서비스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각종 투자지원세제의 감면을 확대에 대한 노력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개발 관련 지원세제에 대한 중요성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강조되고 있으나, 주로 규모가 크거나 중화학공업 중소기업이나 R&D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경공업 업종의 중소기업은 지방중소기업과 설비투자지원세제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지원세제를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의 범위나 요건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3. 중소기업 법인세율 체계의 검토

<표 4-23>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의 변천

규모별	1975	1981	1989	1991	1998	2002	2005
법인세율	▪ 20% 300만원 이하	▪ 25% 5천만원 이하	▪ 20% 8천만원 이하	▪ 20% 1억원 이하	▪ 16% 1억원 이하	▪ 15% 1억원 이하	▪ 13% 1억원 이하
	▪ 30% 300만원 초과	▪ 40% 5천만원 초과	▪ 30% 8천만원 초과	▪ 34% 1억원 초과	▪ 28% 1억원 초과	▪ 27% 1억원 초과	▪ 25% 1억원 초과
	▪ 40% 500만원 초과						

규모별	2008	2009	2010
법인세율	▪ 11% 2억원 이하	▪ 11% 2억원 이하	▪ 10% 1억원 이하
	▪ 25% 2억원 초과	▪ 22% 2억원 초과	▪ 20% 1억원 초과

<표 4-24>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연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1981	61.50	50.00	60.00	-	48.00	50.80	57.80	52.00	49.70
1991	42.00	42.00	56.25	49.98	35.00	50.80	30	33.00	38.85
2001	29.00	36.43	38.90	40.87	35.00	28.00	28.00	30.00	39.26
2010	26.00	34.43	30.18	39.54	25.50	28.00	26.30	28.00	39.21

자료: OECD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국제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간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등 조세환경이 변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에서 각국은 자본과 기술 및 인력의 이동을 유인하여 축적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려는 동기가 커지게 되었다. 조세경쟁의 주요 대상 세제는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로서,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경쟁은 최근 들어서 더욱 가속되는 추세이고, 실제로 OECD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21>에서 보이듯이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은 줄어들고 있다. 1981년의 경우 핀란드가 61.50%의 가장 높은 세율을 보이면서 당시 통계가 존재하는 OECD국가 22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이 47.52%였다. 하지만 약 20년이 흐른 2010년의 경우 미국이 39.21%의 가장 높은 세율을 보이면서 OECD 국가 31개국의 평균이 25.91%이다. <표 4-20>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도 줄어들고 있다. 법인세는 1950년에 35% 세율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1952년에 우리 역사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인 75%를 기록했고, 1953년과 1954년에도 70%를 유지했다. 전쟁이 끝난 후 30%대로 줄어들었다가 1970년대 40%로 상승한 후 1980년대에 다시 30%, 1990년대에 20%대로 줄어들었다. 그 후 2000년에 28%였던 것이 2001년 27%로, 2005년 25%로 줄어들다가 2010년에는 22%로 줄었고 현행 20%로 부과되고 있다.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인하하여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경감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매출액규모, 자산규모, 이익 등이 대기업에 비하여 매우 낮으므로 그 실질적인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고 대기업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지원의 혜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규모법인제도를 두어 일정한 규모 이하의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해당 법인의 손익을 개인주주에게 출자비율로 배분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영국의 노동당정부는 법인세의 기본세율은 30%이나 중소기업 법인세율은 1997년 이래 23%에서 19%로 인하하였다. 프랑스정부도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낮

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계속인하하고 있다.⁷⁾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이 복지나 서민생활 지원에 쓰일 수 있는 재정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한테 주로 혜택이 갈 법인세 대폭 감면이 지금 시기에 바람직한 정책인지를 두고 논란은 여전히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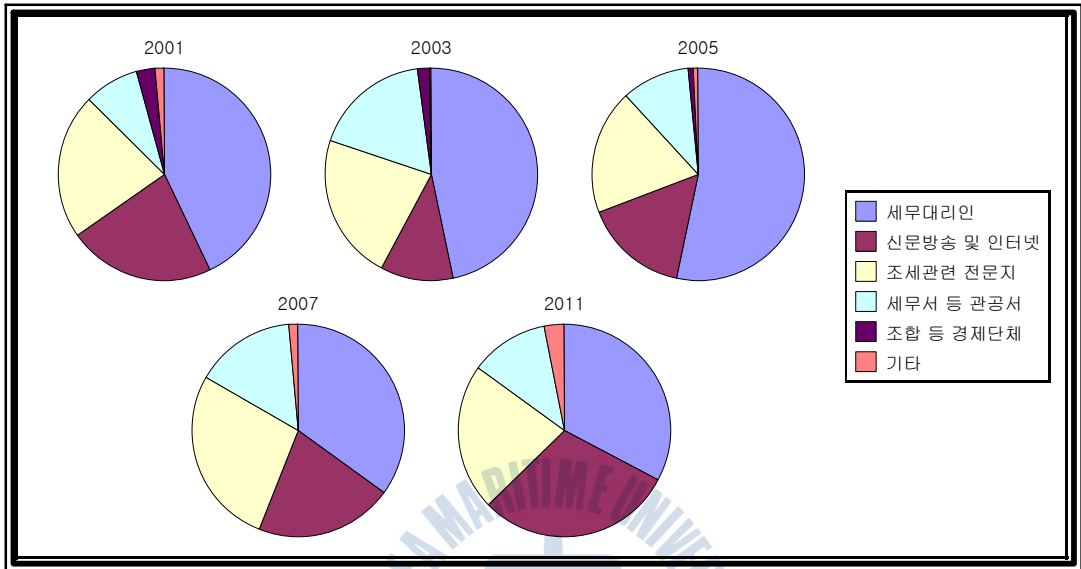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과세표준 2억원 초과(세율20%)와 2억 이하(세율10%)로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 체계를 더 세분화하여 소규모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법인세율 1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든지 또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등으로 나누어 10-25%의 세율을 분할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면 실제로 법인세율 인하시의 세수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하여,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고용, 부가가치, 생산 등을 효율적으로 증진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7) 김주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한국상업교육학회, 2004), p.13.p.14

4.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교육 및 홍보강화

<그림 4-3> 조세관련 정보취득방법 비중추이



<그림 4-2>와 같이 해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지원세제의 내용을 모르거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세제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원세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세무지식의 부족으로 세제 감면 등 지원혜택에서 소외되거나 과세정보 부족으로 세금실수가 빈번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세무교육이 꼭 필요하다.

즉, 세법개정시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경영자에 대한지원세제활용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세무실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교육 실시,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실무교육 강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물의 정기적인 발행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지원세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⁸⁾

또한,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인터넷 활용능력 제고 등 중소기업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는 정보화 인큐베이터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 확대를 통해 벤처기업, 여성기업, 수출기업,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우대하여 차별화하며 정보화 인큐베이터 참여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및 수요교육과정을 파악하여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등 사이버 정보대학을 개설할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 E-mail 서비스 및 웹호스팅 등 중기청 정보화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지원도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인큐베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애로상담, 사이버교육 및 경영정보제공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고성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학논집제25권, 1998), p.73

제5장 결론

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기간별 흐름의 활용실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들을 검토하고, 최근 급변하는 21세기 경제환경의 패러다임에 유연하고 적합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앞으로 조세지원제도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매우 복잡하게 많은 종류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의 기간별 흐름으로 볼 때 실제로 조세지원의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소재중소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은 조세지원제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더라도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방법으로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별감가상각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방법보다는 세율의 인하·세액감면·세액공제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방법이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 여러 가지의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또 시정이 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라도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실효성이 바로 제고 되고 또 이러한 지원세제가 본래 목적인 방향으로 폭넓게 활용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연구의 요약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보다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하며, 그 기초는 공정경쟁제도 및 관행에 정착에 두어져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정책대응은 결국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과 노력이 제대로 수행되고 그 성과가 나타날 때만 비로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확립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중소기업 현실에 부합되도록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환경을 고려하는 조세지원제도가 필요하다. 기술개발지원세제를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의 범위나 요건 등의 조정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물류인프라, 시장접근성 등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세제지원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준비금의 손금산입·특별감가상각 등의 간접적인 지원제도 보다는 법인세·소득세의 세율인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통한 조세지원제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감면·세액공제 등은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세감면·세액공제 등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현행 법인세율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법인세 비중이 높아 법인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법인세체계를 더 세분화하여 소규모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든지 또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은 조세·회계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세무대리인 등에게 의존하여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모르거나 지원제도의 활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인 홍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홍보, 정기적인 교육실시, 조세지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물의 정기적인 발행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고충사항을 찾아 조정해 주는 조세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조세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어느 연구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본 결과를 전반적인 중소기업 운용실태에 일반화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업체와 기관들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기간의 한계 등으로 부산·울산지역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향후 지역 특성별, 주요 생산품별 세분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응답자의 지각 또는 인지된 수준을 근거로 한 주관적 평가이다. 따라서 설문지법이 지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아쉽게 생각되는 점은 실태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가 적었다는 점이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여 충분한 수의 표본을 수집한다면 보다 나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고성삼, “우리나라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중소기업학회」, 1998.4
- 권순철, “중소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 「세무학연구」 제7호, 한국세무학회, 1996.
- 김상술,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월간 세무」, 2005. 6.
- 김유찬·김진수,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인하는 필요한가?”, 「세무학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3, 12.
- 김주택,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상지대학교 2000.
- 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11.
- 나상광,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계명대학교, 1998.
- 노현섭·정문현,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가능 관계 :정치적비용가설과 조세혜택가설의 검증” 「세무학연구」 제6호 pp. 85 ~ 114, 1995.
- 박상범, 「중소기업론」, 삼영사, 1998.
- 박성배·이장화, “소기업 감면효과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004.
- 서정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 개편방향」, 중소기업연구원, 2005
- 조희영·박상범, 「중소기업경영론」, 삼영사, 1997.
- 송기국, “한국의 조세지원정책이 투자에 미친 효과분석” 「감사」 제59, 60, 61호, 감사원, 1998.
- 신승모, “법인세부담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제14호. 한국세무학회, 1998.

윤종욱, “조세감면수단과 기업자본구조에 관한 실증연구”, 「대덕대학 논문집」 제19호, 2001.

이만우외, 「세법개론」, 세학사, 2003.

이준규, “조세혜택과 세무관리”, 「사회과학 논총」, 경희대학교, 1995.

이철재, 「세법강의」, 세경사, 2005.

이종곤, “투자유인 세제의 유효성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이준규, “법인세제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 법인세부담율의 측정에 의한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1992.

이규복, “법인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장희복,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적정 법인세율과 조세감면정책”, 홍익대, 2004. 6.

전춘옥·조현연·박성규·김용승,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 「산업경영연구」, 카톨릭대학교, 1996.

전규안·오용락, “거래소기업과 코스닥기업의 특성과 조세부담”, 「세무학연구」 제20권 1호, 한국세무학회, 2003.

전규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200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의 중소기업 정책연구」, 2005. 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세제·세정이용 및 애로 실태분석」,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세제 관련 중소기업범위의 국제비교」, 2007.

표석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201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확인메뉴얼」, 201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현황」, 2011.

한영희,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이 기업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11호, 한국세무학회, 1998.

2. 국외문헌

Kern, Beth B. and Michael H. Morris(1992), "*Taxes and Firm Size : The Effects of Tax Legislation during the 1980s*", The Journal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pp.80 ~ 96.

Porcano T. (1986), "*Corporate Tax Rates : Progressive, Proportional or Regressive*", The Journal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pp.17 ~ 31.

Wang S. W.(1991),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s : A Test of Firms' Political Success*", The Accounting Review, pp.158 ~ 169.

Wilkie, P. J.(1988), "*Corporate Average Effective Tax Rate and Inference about Relative Tax Preferenc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pp.75 ~ 88.

Zimmerman J. C.(1983), "*Tax and Firm Sizes*", "*Th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pp.119 ~ 149.

2. Web Site

강성일세무사의세상통신

(<http://blog.naver.com/kangtax?Redirect=Log&logNo=140104477359>)

매일경제 세무가이드 (<http://tax.mk.co.kr/shop>)

백제의 꿈 (<http://blog.naver.com/nmcho71?Redirect=Log&logNo=20009102054>)

비영리법인의세무와회계실무 (http://cafe.naver.com/neog7.cafe?iframe_url=)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http://blog.daum.net/jy9713/16153223>)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과워택스

(http://cafe.naver.com/power-tax.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04)

G4B기업지원플러스

(<http://blog.naver.com/g4bnipa?Redirect=Log&logNo=10091834867>)

SERI.org (<http://seri.org/kz/kzKsosv.html?no=14882&ucgb=KZKSOS>)



설문지

1. 귀사의 회사의 분류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회사
- ② 법인회사

2. 귀사의 기장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직접기장
- ② 위탁기장
- ③ 기타(병행)

3. 회계처리 및 세무 신고할 때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
- ②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복잡
- ③ 세무신고 등 납세협력비용 과다
- ④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 ⑤ 기타

4. 조세관련 정보취득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세무대리인
- ② 신문, 방송 및 인터넷
- ③ 조세관련 전문지(도서·잡지)
- ④ 세무서 등 관공서
- ⑤ 기타

5. 세정혁신에 우선적 과제는 무엇입니까?

- ① 다양하고 차별화된 납세서비스 제공
- ②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적극 해소
- ③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 ④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지원
- ⑤ 성실납세자 우대방안 확충 및 세무대리인 역할 재정립

6. 성공적 세정혁신을 위한 추진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체계적인 개혁과제의 설계와 지속적인 개혁추진
- ② 세무공무원(조직)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의 강화
- ③ 납세자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강화
- ④ 기타

7. 세무행정상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세액 증액 요구 및 세금 과다부과
- ② 불필요한 신고서식 과다
- ③ 세무공무원의 대민봉사 정신결여
- ④ 세무지식 미숙으로 인한 신고누락 가산세
- ⑤ 기타

8. 세무조사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 ① 명백한 탈세 등 혐의 이외의 세무조사 배제
- ② 세무조사대상 축소, 조사강도 강화
- ③ 정기조사 위주운용, 수시조사 엄격제한
- ④ 현행유지
- ⑤ 납세자 권익보호

9. 경영안정, 기술인력개발, 창업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세제지원은 무엇입니까?

- 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감면
- ③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④ 법인세 분납기간의 중소기업 연장
- 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0.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세제지원은 무엇입니까?

- 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③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 ④ 임시투자세액공제

1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 ①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 ② 비교적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 ③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이 부진한 편임
- ④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⑤ 활용여부를 모르겠음(세무대리인 위탁 등)

12.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 ① 많은 도움이 되었음
- ② 다소 도움이 되었음
- ③ 별로 도움이 안됨
- ④ 전혀 도움이 안됨

1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부진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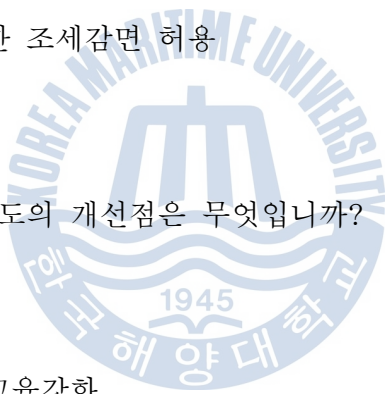
- ①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② 지원제도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함
- ③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만 감면받음
- ④ 중복적용이 배제되어 한가지 밖에 감면 받지 못함
- ⑤ 감면혜택이 거의 없음

14.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허용
- ② 각종 투자지원세제의 감면을 확대
- ③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상시화
- ④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
- ⑤ 법인(소득)세 인하

1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① 지원대상범위의 확대
- ② 감면요건의 완화
- ③ 지원제도 홍보 또는 교육강화
- ④ 최저한세제도의 개선
- ⑤ 중복적용 배제제도 개선



감 사 합 니 다

감사의 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대학원을 진학 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또 다른 도전 앞에서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원 과정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믿음을 주신 안기명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논문에 많은 채움을 주신 이기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지도학생 이상으로 아껴주신 류성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